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 정족산사고본 실록형지안에 나타난 실록의 관리와 보존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학 전공

전 은 진

# 정족산사고본 실록형지안에 나타난 실록의 관리와 보존

지도교수 이 상 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학 전공
전 은 진

전은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왕실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은 편찬이 완료된 후 춘추관과 지방의 외사고(外史庫)에 보관을 하였다. 보관된 실록은 봉과(封裹)와 봉안(奉安), 포쇄(曝曬), 수보(修補) 등을 통해 관리・보존하였다. 또 사각수개(史閣修改)를 해서 실록의 보존 환경도 관리하였다. 이러한 관리를 시행하고 작성한 것이 오늘날의 장서점검대장에 해당하는 실록형지안(實錄形止案)이다. 본 연구에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정족산사고 실록형지안을 관리 유형별로 나누고, 각각의 진행과정과 실록형지안에 나타나 있는 사항들에 대해 관리와 보존의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보았다. 조선 중・후기에 실록의 관리체계를 밝히고, 중요 기록의 관리 및 보존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실록의 관리는 봉안 전 단계인 봉과부터 시작된다. 봉과는 실록을 붉은 명주 보자기에 싸서 궤에 넣는 것으로 천궁가루와 창포가루가 들어간 주머니를 궤에 함께 넣음으로써 벌레와 습기 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손상을 예방한다. 오늘날 서고에 기록물이 입고되기 전에 훈증하거나 소독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봉과는 실록궤를 열고 다시 닫을 때마다 반복되는 과정으로 실록의 보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봉안형지안은 사고에 봉안이 완료되고 나서 작성되므로 사고에 어떤 서적류가 입고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관리 작업이 실시될 때마다 봉안형지안의 작성은 기존 내역에 후속하여 기재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포쇄는 그늘진 곳에서 바람에 책을 말리는 것으로 습기와 벌레를 제거하는 책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이다. 포쇄 기간 중에는 책을 말리는 것 외에도 책의 상태점검도 병행하며, 사각건물과 실록궤에 대한 상태점검도 시행되었다. 포쇄가 마무리된 후에는 실록은 다시 봉과하여 궤에 넣는데, 궤에 같이 들어가는 물품들은 교체주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 주었다. 포쇄형지안의 주기(註記)를 보더라도 습기에 의한 손상은 있어도 해충에 의한 피해는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

로 주기적인 포쇄와 물품교체 작업은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실록의 수보는 전주사고본 실록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실록형지안에는 병자호란과 그 이후 관리 부주의로 인해 훼손이 심한 전주사고본 실록 밀랍본의 복원과 보존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존 환경의 관리 측면에서 사각수개에 관련된 형지안도 살펴보았다. 포쇄를 시행하고, 약품주머니를 교체해 주어도 사각건물의 관리가 소홀하다면 실록궤와 궁극적으로는 실록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사각수개작업도 중요한 관리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실록의 고출(考出)은 국가의 중대한 행사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례(先例)를 확인하거나,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정족산사고는 다른 지방 외사고에 비해 서울과 가깝다는 점과 유일하게 임진왜란 이전에 편찬된 실록인 전주사고본 실록이 보관되어 있어 실록의 고출이 빈번하였다. 실록 기사나 『승정원일기』 기사와 고출형지안을 통해 고출의 양상을 살펴보면, 영조 대까지 고출 횟수가 많다가 순조 대부터 급격히 줄어든다. 이는 영조 대에 의궤와 의례서 제작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의례의 전형을 갖추게 되어 고출의 필요성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록의 고출을 시행하면서 실록 및 사고 건물에 대한 비정기적인 상태 점검이 자주 나타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포쇄나 사각수개 등의 사고 관리가 더 충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실록형지안이 기록학의 중요 연구 대상으로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실록의 전통적인 보존 관리 방법을 통해 향후 중요 기록 또는 서적의 관리 제도를 전승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정족산사고, 실록형지안, 포쇄, 고출, 수보, 기록관리**
**학 번 : 2017-23322**

# 목 차

머리말 ····· 1
1. 연구목적과 의의 ····· 1
2. 연구대상 및 방법 ····· 3

제 1 장 실록형지안에 나타난 관리 유형과 보존 ···· 6
제 1 절 실록의 봉과(封裹)와 봉안(奉安) ····· 6
제 2 절 실록의 포쇄(曝曬) ····· 14
제 3 절 실록의 수보(修補) ····· 21
제 4 절 사각수개(史閣修改) ····· 28

제 2 장 실록형지안에 나타난 고출과 관리 ····· 33
제 1 절 고출(考出)의 배경과 추이 ····· 33
제 2 절 고출의 양상 ····· 36
제 3 절 고출과 사고(史庫)의 관리 ····· 43

맺음말 ····· 46

참고문헌 ····· 48
Abstract ····· 50
부록 ····· 52

# 표 목 차

[표 1] 『탁지정례』에 나타난 정족산사고 포쇄 시 물목 ····· 17
[표 2] 정족산사고의 실록수보형지안 ····· 22
[표 3] 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고출 관련 기사 ····· 36
[부록 표 1] 강화사고 및 정족산사고의 봉안형지안 ····· 52
[부록 표 2] 강화사고 및 정족산사고의 포쇄형지안 ····· 53
[부록 표 3] 정족산사고의 사고수개형지안 ····· 57
[부록 표 4] 정족산사고의 고출형지안 ····· 58
[부록 표 5] 춘추관사고와 강화사고의 봉안형지안 비교 ··· 60

# 그 림 목 차

[그림 1] 정족산사고 포쇄형지안 ····· 18
[그림 2] 정족산사고 실록형지안의 실록상태 주기(註記) ···· 24
[그림 3] 실록수보 주기와 한 궤당(每一櫃) 물목 ····· 26
[그림 4] 사각수개처(史閣修改處)의 소요물목과 수리내용 ···· 31

# 머리말

## 1. 연구목적과 의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 왕실의 각종 『의궤』는 문화재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기록물로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국내외의 역사학·문화재학·서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들 기록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조선왕조실록』은 편찬과정, 실록을 편찬한 사관(史官)에 대한 심층 연구, 실록에 기록된 상세한 내용 분석 등 여러 논점에서의 깊이 있는 연구가 도출되었다.

『실록형지안(實錄形止案)』은 사고(史庫) 안의 장서를 관리하는 오늘날의 장서점검대장이라 할 수 있다.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의 관리 대장으로 실록의 관리 및 보존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실록형지안은 실록의 편찬과정, 사관의 역할, 자료적 가치와 실록의 보관 관리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 과정에서 하나의 사료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다.

실록형지안을 이용한 여러 선행연구 중에서 배현숙의 연구[1]는 실록의 찬수(纂修) 방법, 봉안과 관리, 실록의 형태와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실록의 보관·관리와 서지적(書誌的) 상태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실록형지안은 실록의 봉안과 관리 부분에서 전거 기록으로 인용되었다. 송기중 외 연구[2]는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실록의 관리에 집중된 연구 보고서이다. 실록의 보관과 관리에 대

1) 배현숙, 『朝鮮實錄硏究序說』, 태일사, 2002.
2) 송기중, 신병주, 박지선, 이인성 저,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1)』 2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한 연구의 차원으로 국내 실록형지안의 소장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그 중 정족산사고 실록형지안과 태백산사고 실록형지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병주의 연구[3]는 실록형지안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실록의 관리체계를 정리하고, 자료적 가치를 평가하며, 기초조사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오대산사고 실록형지안을 분석 정리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하 장서각)에서 소장된 '사고형지안'을 전수 조사하여 형지안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사고형지안'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김정미의 연구[4]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으로서 기재 내용과 작성 방식의 특수성을 조명하여 '사고형지안'의 가치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실록 연구 이외의 부분에서는 17세기 실록형지안 후반부에 기록된 일반서책에 대해 분석한 안미경의 연구[5]와 선원록(璿源錄)의 보존체계에 대한 조계영의 연구[6]가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실록의 연구와 함께 실록형지안의 내용 분석 및 형태, 작성 형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사료관점에서 연구가 더 활발하여, 최근에는 전수 조사는 하였지만 서지학적인 분석에 더 치중하였다. 실록형지안은 실록이라는 중요한 기록을 관리·보존하면서 관리의 결과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조선후기의 기록 관리와 보존 체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 기록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기적·기록내용 면에서 특정 형지안에 한정하여 기록의 보존 및 관리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분석

---

3) 신병주, 「'實錄形止案'을 통해 본 조선왕조실록의 관리체계」, 『국사관논총』 제102집, 국사편찬위원회, 2003.
신병주,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의 간행과 보관」, 『역사와 현실』 제61호, 2006.

4) 김정미, 「조선시대 사고형지안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4.

5) 안미경,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 일반서책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55집, 한국서지학회, 2013.

6) 조계영, 「조선후기 선원각의 왕실 기록물 보존체계: 정족산사고 '선원록형지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55집, 조선시대사학회, 2010.

하고, 조선 중·후기에 실록의 관리체계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실록형지안의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실록의 관리와 보존의 양상에서 현대의 기록관리 영역을 돌아보고 전승·활용할 만한 내용에 주목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형지안(形止案)은 규장각 소장 580여 책과 장서각 소장 100여 책 등이 현재 전하고 있다. 규장각에서는 실록형지안 357책, 선원록형지안 201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수량은 대부분 외규장각형지안이다. 장서각에는 실록형지안을 90책 가량 소장되어 있다.[7]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 연구로서 현전하는 전체 실록형지안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사고별로 분류해 보니 적상산사고 형지안은 대부분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고, 오대산·태백산·정족산사고의 형지안은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다. 현전하는 형지안의 수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서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실록형지안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시기적·기록내용 면에서 특정사고의 형지안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본고에서 선정한 연구대상은 규장각 소장 정족산사고본의 실록형지안으로 약 140여 책이다.[8] 다른 지방사고와 달리 정족산사고에는 조선전기에 편찬된 전주사고본 실록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정족산사고의 실록형지안에는 전주사고본 실록에 대한 관리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점이 정족산사고의 실록형지안을 연구대상으로 삼게 된 이유이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성주사고와 충주사고, 서울의 춘추관사고가 불탔다. 화재 및 전란으로 전주사고본을 제외하고 임진왜란

---

7) 송기중 외, 앞의 책, 2007, pp.97-98.

8)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上), 서울대학교도서관, 1981, pp.409-424에서 실록형지안 목록을 발췌하고 정족산사고 실록형지안을 분류하여 연구대상을 삼았다.

이전의 200여 년간의 사고 소장 기록이 모두 소실되고, 유일하게 남은 전주사고본 실록의 복인(復印) 필요성이 논의되었다.[9] 이에 따라 1603년(선조36)에 묘향산에 있던 전주사고본 실록을 강화부 사고로 옮기고, 복인 시 최소한의 분량만 이동하여 인출(印出)하였다.[10] 복인작업이 끝나고 전주사고본 실록은 1606년(선조39) 강화사고에 다시 봉안이 된다. 1636년에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전주사고본 실록은 일부 손상되었으나 1660년 정족산사고가 설치되기 전까지 강화사고에서 소장, 관리되다가 정족산사고로 이안(移安)되었다.[11]

140여 책의 정족산사고 실록형지안은 기록 관리의 작업 내용과 목적에 따라 크게 실록의 봉안(奉安), 실록의 포쇄(曝曬), 사각수개(史閣修改), 실록의 수보(修補), 실록의 고출(考出) 등으로 나눌 수 있다.[12] 각 형지안의 유형별로 실록 관리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정족산사고의 실록형지안에서 특이한 점은 실록의 수보에 대한 형지안이 있다는 것이다. 봉안이나 포쇄는 다른 외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전주사고본 실록에 대한 관리 부분은 정족산사고 형지안에서만 나타난다. 병자호란 이후의 실록 피해 상황 및 상태 조사에 대한 내용이 주기(註記)되어 있고, 1664~1665년과 1699년에 진행된 실록수보의 내용이 형지안에 기록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전주사고본 실록에 어떤 수리·복원 처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추후 실록의 관리 와 보존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정족산사고에 전주사고본 실록이 있고, 거리상으로 다른 외사고에 비

---

9) 『선조실록』 선조 35년 8월 19일 무신조. “春秋館啓曰 累朝信史 至今藏置於寧邊客舍 此實非奉安之所 **不早移置謄書** 恐有意外之悔”.

10) 『선조실록』 선조 36년 5월 19일 갑술조. “如以合秩 移安於京城 爲不無意外窘急之慮 則或依上年磨鍊啓辭之意 **先爲奉安於江華 量其卷數 漸次取來 逐先印出 還藏江華 亦似不妨**.”.

11) 이상찬, 「전주사고본 실록의 보존과 관리」, 『규장각』제39집,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pp.214-215.

12) 실록형지안의 작성 목적은 표제명을 기준으로 봉안, 포쇄, 사각수개, 실록의 수보, 고출 등으로 분류하였다.

해서 서울과 가까웠기 때문에 실록을 고출하는 일도 매우 빈번하였다. 태백산 사고는 4건, 오대산 사고는 1건의 실록고출형지안이 확인되는 반면에 정족산사고는 53건이나 된다. 실록의 보존 외에도 국가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실록고출형지안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기록이다.

또 다른 특징은 사각수개 관련한 실록형지안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방의 외사고에서도 사각수개 실록형지안이 있지만, 정족산사고에 비해서는 수량이 적은 편이다. 정족산사고의 사각수개 실록형지안은 18건으로 숙종~정조 대까지 분포되어 있다. 사각수개 실록형지안은 기록의 보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강화사고와 정족산사고 실록형지안에 나타난 관리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 유형별로 관리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토대로 기록관리체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정족산사고본 실록형지안은 부록 표에 내용들을 수록한다. 정족산사고의 설치가 완료된 1660년 이후 실록형지안의 표제명에 '江華上', '江華府上' 등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정족산사고가 강화사고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정족산사고의 실록형지안으로 본다.

# 제 1 장 실록형지안에 나타난 관리 유형과 보존

실록의 보관을 담당하는 기관은 실록을 편찬하는 춘추관(春秋館)이었다. 춘추관은 모두 겸직이었으므로 포쇄와 형지안 작성 실무는 춘추관 기사관을 겸임하는 예문관의 봉교(奉敎), 대교(待敎), 검열(檢閱)이 맡았다. 실록형지안에서 실록과 관련된 내용은 왕대별 실록명칭과 궤, 책, 권[13] 등의 수량 및 기록 기간이다. 실록의 보관 내역을 기록한 후에는 어제(御製) 및 의궤, 형지안, 각종 서책의 제목을 궤별로 분류하였다. 형지안의 맨 뒷부분에는 실록관리 임무를 띤 사관의 직책과 이름을 기록하고, 요즘의 사인(sign)에 해당하는 수결(手決)을 두었다.[14] 사관이 수결을 둔 사실을 통해, 형지안의 관리는 책임이 수반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업무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실록의 봉과(封裹)와 봉안, 실록의 포쇄, 실록의 수보와 사각수개 등으로 관리유형을 분류하고 실록형지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실록의 봉과(封裹)와 봉안(奉安)

『조선왕조실록』은 편찬이 완료되고 나면 춘추관과 지방의 외사고에 봉안한다. 실록편찬부터 봉안까지의 전 단계는 의궤로 기록이 되어 있으나, 춘추관사고의 봉안식까지만 한정한다. 외사고의 실록봉안은 의궤 대신 실록봉안형지안을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실록의 봉안은 왕실에서도 큰 행사였기 때문에 각 실록 기사에서도 나타난다. 당시의 실록봉안은

13) 권(卷)은 오늘날의 장(章, chapter)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책(冊)은 책의 수량을 세는 단위로 오늘날의 '권'에 해당한다.
14) 신병주,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책과 함께, 2007, pp.217-218.

중앙의 춘추관사고와 지방의 외사고에 동시에 봉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춘추관사고에 봉안 시 외사고로 보낼 실록까지 함께 봉안식을 거행하였다. 봉안식 이후 사관이 외사고에 파견되고, 각 지방 사고에서 봉안식을 추가로 치른다.[15]

『실록청의궤』에는 실록편찬을 마치고 실록봉안식을 치르기 전에 봉과식(封裹式)이라 하여, 실록을 명주 보자기에 싸서 궤에 넣는 의식을 미리 가진다는 내용이 나온다.『헌종대왕실록청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봉과식의 절차와 세부과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실록궤(櫃)에는 천궁(川芎)과 창포(菖蒲)가루 주머니를 궤의 바닥에 넣고 저주지(楮注紙)로 덮는다. 실록은 홍정주(紅鼎紬) 4폭 보자기에 부록부터 권 번호 역순으로 넣어서 싼 후 저주지와 천궁, 창포 주머니를 넣고 궤를 닫는다. 궤에 담은 후 총재관(總裁官)이 납염(鑞染)된 자물쇠를 저주지로 봉(封)하고 봉안한 날짜를 적고, 자물쇠 열쇠도 저주지로 두르고 총재관이 착함(着啣)하여 자물쇠 중간에 매달았다. 그리고는 임시로 배안탁(排安卓) 위에 안치하였다.[16]

이어서 진행되었던 봉안식(奉安式)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5) 신병주, 앞의 글, 2003, p.17.

16)『헌종대왕실록청의궤』<규14181>「봉과식」"摠裁官以下堂上郎廳 俱以黑團領 開坐先奉 (중략)實錄卷秩 裝潢奉審[不得開卷]後 奉櫃子于地衣上 開櫃 次入芎菖末帒一于櫃底 次覆楮注紙半張于帒上 次鋪紅鼎紬四幅袱于楮注紙上[袱四端出於櫃外] 先入附錄[以左爲首] 次入八卷[實錄]七卷六卷五卷四卷三卷二卷一卷 以次入奉 次摺紅鼎紬袱四端 次覆楮注紙半張 次入芎菖末帒一仍覆櫃盖 鑞染鎖子 以楮注紙封之 書年月日臣謹封 臣字下主管堂上着啣 鎖之開金 以楮注紙條里囲封 書臣謹封 臣字下主管堂上着啣 懸結于鎖子中間 權安于排案卓上".

봉안식이 있는 날에는 총재관 당상, 도청, 낭청과 춘추관당상이 흑단령을 갖추고 실록청에 모인다. 어람부록과 실록을 담은 궤는 채여(彩輿)에 싣고, 초초, 중초 등의 사초(史草)는 가자(架子)에 싣는다. 고취(鼓吹)가 연주되면 상마대, 인로군, 향정, 고취의 순으로 행진을 한다. 실록채여는 인정전(仁政殿)의 월대(月臺) 위의 임시 봉안처에, 어람부록채여는 연영문(延英門) 바깥에 봉안한다. 봉궤자(奉櫃子)와 초기(草記)는 승정원에 바치고, 총재관 이하의 관원은 사고에 사배(四拜)를 올린다. 예(禮)를 마친 후 실록을 담은 궤는 임시로 봉안한 후 사고를 봉(封)한다.[17]

춘추관사고에 임시로 봉안된 외사고의 실록은 관상감(觀象監)에서 길일을 택하여 외사고에 봉안을 한다. 춘추관사고 봉안의식과 같이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의식은 춘추관 봉안식과 동일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점이라면 춘추관사고에 임시로 봉안이 되어 있는 실록을 봉출(奉出)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동을 해야 했다. 또 춘추관사고 봉안식에는 실록청 총재관 이하 실록편찬에 참여한 관원이 대부분이 참석하였다면, 외사고의 실록봉안은 중앙에서 파견된 봉안사(奉安使)와 사관이 참석하였다. 봉안사는 대부분 당상관이 파견이 되고, 사관은 예문관의 봉교, 대교, 검열 중에서 파견이 되었다. 당시에 파견되었던 관리들의 직책과 이름은 봉안형지안의 권말에 기록되어 있다.

---

17) 『헌종대왕실록청의궤』 <규14181> 「봉안식」 "其日奉安時 摠裁官堂上都廳郎廳及春秋館堂上 俱以黑團領 會于本廳 奉安時 至御覽附錄櫃子及實錄櫃子 奉載彩轝內覆以紅木袱 初中草及初再見本 載之架子 以紅木袱覆之 紅條所維結振發鼓吹振作 上馬臺及引路軍前導 次儀仗香亭 次鼓吹次 御覽附錄彩轝 忠贊衛二人隨之 次實錄彩轝 忠贊衛各二人隨之 粉板郎廳及校讎郎廳 分排陪從 次春秋館堂上 次摠裁官 次主管堂上及校正校讎堂上 次都廳郎廳 以次陪詣至仁政門實錄彩輿入安于仁政殿月臺上權安處 御覽附錄彩轝直奉于延英門外奉櫃子 及草記呈于承政院 摠裁官以下諸堂郎 詣春秋館東庭 以次序立 史庫肅拜時 贊儀唱四拜 摠裁官以下四拜 行禮畢 郎廳奉實錄櫃子[忠贊衛助擧] 權安于春秋館大廳上 摠裁官以下 陞堂各就 次春秋館官 臨時開庫 入奉實錄櫃子後 仍爲封庫 摠裁官以下乃退".

실록을 봉안하러 가는 행차와 봉안식 등의 행사에는 파견된 인원 외에도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사고가 있는 지역에서 부담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하삼도(下三道)가 기황(飢荒)으로 어려울 때 봉안사를 보내면 거듭 민폐를 끼칠 테니, 미루었다가 가을에 보내주십시오”라는 대관(臺官)의 청을 국왕이 받아들였다는 실록 기사[18]를 통해 봉안사 행렬을 맞이하는 지방에서 비용부담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봉과를 실록 관리와 보존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방충과 방습 조치가 봉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서적의 보존에 있어서 위험한 3가지 요소로는 물(비, 습기), 불과 벌레가 있다. 이 중에서 습기와 충해에 대한 조치를 천궁과 창포가루 주머니를 궤에 넣음으로서 취하고 있는 것이다. 봉과의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실록궤 바닥에 천궁, 창포 가루 주머니(芎菖末俗)를 넣고 저주지 반장(半張)으로 덮은 후에 홍정주 보자기로 싼 실록을 넣는다. 그리고 다시 저주지 반장으로 덮은 후에 천궁, 창포 주머니를 넣고 궤를 닫는다. 이 봉과의 과정은 봉안 이후에도 실록궤를 열었다가 다시 실록을 궤에 넣는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된다. 직접적으로 실록을 보존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천궁과 창포는 방충과 방습에 효과가 있는 약재이다. 천궁은 한방에서 사용하는 약재의 하나로 민간에서는 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하여 옷장에 넣어두곤 했다. 창포는 한방에서 뿌리줄기(根莖)를 약용으로 사용하여 건위, 진정, 진통, 항진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잎과 줄기는 향료로 이용하여 목욕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창포 삶은 물을 사용하였다.[20] 실록궤에 천궁과 창포 가루를 넣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고,[21] 이 중에서 창포는 방습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던 것

---

18) 『선조실록』 선조 4년 4월 30일 신유조. “臺官啓請 實錄奉安使 **當此下三道飢荒之時** 重貽民弊 **請退遣於秋成** 上從之”.

19) 송기중 외, 앞의 책, pp. 30-35.

20) 김혜자, 김세원, 신창식, 「창포잎과 뿌리 중의 성분 분석」, 『한국식품과학회지』 32권 1호, 한국식품과학회, 2000. p.37.

으로 보인다. “습기를 막는 데는 창포가루 만한 것이 없으니 실록이 지금까지 무탈한 것은 전적으로 창포 가루 때문이다”[22]라는 김노경(金魯敬)의 말에서 이런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천궁과 창포의 방충, 방습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약재주머니를 교체하여 실록의 보존이 잘 되도록 관리하였다.[23]

실록봉안형지안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실록의 편찬이 완료되고 나서 춘추관과 지방의 외사고에 봉안하고 형지안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사각수개나 실록수보를 목적으로 실록을 이안했다가 다시 환안(還安)을 하고 작성하는 경우이다.[24]

봉안형지안의 작성형식은 작성 내용에서 포쇄나 고출형지안과는 달리, 봉안하는 실록과 날짜, 궤 번호, 실록명칭, 수량 그리고 담당하는 사관의 관직과 이름이 들어간다. 왕대별 실록이 편찬되고 봉안되면서 작성되는 봉안형지안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춘추관사고 봉안식 때 작성된 것과 지방 외사고에 봉안한 후에 작성된 것 등이다. 춘추관사고의 봉안형지안은 ‘江華上’, ‘鼎足山城上’ 등과 같이 봉안된 사고명과 그 당시 봉안한 실록에 대한 내역만 기록한다. 권말에는 실록청 총재관 이하 실록 편찬에 참여한 관리들의 관직명과 이름을 적고 있다. 반면 외사고의 봉안형지안은 앞부분은 거의 동일하나 권말에 파견된 봉안사와 사관 2명의 관직명과 이름을 적고 있다.

1657년(효종8)에는 『선조수정실록』 8책을 봉안하였는데, 강화사고 형지안이 2책 남아있다. 1657년 9월 봉안형지안[25]과 같은 해 10월 19일 봉안형지안[26]이다. 1657년 9월 봉안형지안은 봉안되는 실록의 내역과 총재

---

21) 『인조대왕실록찬수청의궤』, 移文秩, 계사 3월 19일 戶曹關, “一 爲相考事 今此實錄入盛櫝中 **辟蠹所用 菖蒲末川芎末 每一櫝上下侖**(후략)”.

22) 『승정원일기』 순조 24년 8월 10일 경오조. “聞翰林曝曬時所傳 則**禦濕莫如菖蒲末** 史庫陰濕 倍於太室欌內 而**實錄之至今永久無頓 非他 全由於蒲末**云”.

23) 천궁과 창포 가루 주머니의 정기적인 교체에 대한 내용은 본 고의 제1장 제2절 ‘실록의 포쇄’에서 다룬다.

24) 실록의 이안과 환안은 큰 범주에서 실록을 이동했다가 다시 사고에 봉안하는 것으로 보고 관리유형 중 ‘실록의 봉안’으로 분류하였다.

25) ‘표제명: 宣祖朝 江華上 實錄修正廳形止案’, 1657년 9월, [규9685].

관 이하 관원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춘추관사고 봉안 시 작성된 봉안형지안으로 보인다. 10월 19일 봉안형지안은 한 달 뒤에 봉안이 진행이 되었고, 기존의 소장내역에 『선조수정실록』 8책에 대한 목록이 추가되어 있으며, 뒷부분에 봉안사와 사관 2명에 대한 관직명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27] 이러한 이유로 1657년 10월 봉안형지안이 실제로 강화사고에 실록을 봉안하고 작성한 형지안으로 생각된다. 실록부분의 주기사항은 3년 전 1654년 10월 봉안형지안[28]에서 실록 상태조사하고 적은 주기사항과 변동 없이 기록되어 있다.

정족산사고의 실록봉안 시기를 월별로 정리해보면[29], 1월 1건, 3월 2건, 5월 3건, 6월 2건, 7월 3건, 8월 2건, 9월 6건, 10월 3건, 11월 1건, 12월 1건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봉안사가 파견이 되면 그 행차와 봉안행사에 동원되는 인원과 비용의 부담이 있어 대체로 가을시기(음력7~10월)에 봉안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에 실록이 처음 봉안된 것은 1595년(선조28)이나, 얼마 있지 않아 영변 묘향산으로 실록을 옮겼다. 이 당시에 이동하고 작성된 봉안형지안은 발견되지 않지만, 1599년(선조32) 9월 27일 『사고포쇄형지안』[30]을 통해서 묘향산으로 옮긴 실록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603년(선조36) 실록의 복인(復印)이 결정되면서 전주사고본 실록은 다시 강화도로 옮겨지게 된다. 1605년(선조38)에 강화사고가 설치[31]되고 1606년(선조39) 전주사고본 실록이 강화사고에 봉안된다. 이와 관련 있는 형지안이 1606년 6월 봉안형지안[32]이다.

---

26) '표제명: 順治十四年十月日史庫上 實錄形止案', 1657년 10월 19일, [규9714].
27) 본 고의 [부록 표 5] 춘추관사고와 강화사고의 봉안형지안 비교의 사진 참조.
28) '표제명: 江華史庫上 順治十一年十月日 實錄奉安後形止案', 1654년 10월, [규9545].
29) 본 고 부록의 [부록 표 1] 강화사고 및 정족산사고의 봉안형지안을 참조.
30) '표제명: 萬曆二十七年己亥九月二十七日 史庫曝曬形止案', 1599년 9월 27일, [규10003].
31) 『선조실록』 선조 39년 4월 28일 병인조. "(생략) 而似聞 <u>江華史閣 上年已爲修建</u> 太白五臺及香山等處史閣 亦幾畢云(후략)".
32) '표제명: 萬曆三十四年丙午六月日 宣祖丙午 江華府史冊奉安形止案', 1606년 6월, [규9467].

1653년(효종4) 7월 1일 봉안형지안[33]은 『인조실록』봉안에 대한 형지안이다. 이 형지안은 봉안된 『인조실록』 50권 50책에 대한 내역만 적혀있고, 뒷부분에 총재관 이하 관원들의 직책과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춘추관사고 봉안 시 작성되었던 형지안으로 보인다. 이후 1654년(효종5) 10월에 표제명 '실록봉안후형지안'(규9545)에 『인조실록』 50권 50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강화사고에는 1654년 10월에 봉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형지안 권말에 봉안사와 사관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1654년 10월 봉안형지안은 실록봉안을 하면서 동시에 실록의 상태점검을 진행하여 주기를 한 중요한 형지안이다.[34]

1666년(현종7) 1월 18일 봉안형지안[35]은 1664년부터 1665년까지 진행된 실록수보작업을 완료하면서 낙권(落卷)·낙장(落張)을 등서(謄書)한 실록이 정족산사고에 봉안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실록의 봉안과 다르게 사고의 설치나 개건(改建)의 이유로 소장하고 있던 서적의 이동이 있는 경우도 넓게는 봉안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족산사고 이안・환안 형지안은 3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1660년 12월 이안형지안[36], 1707년 11월 환안형지안[37], 1813년 3월 이안형지안[38]이다.

1660년 12월 이안형지안은 1660년(현종1) 12월 3일에 강화사고에서 새로 설치된 정족산사고로 실록을 이안하고 작성한 형지안이다. 『선조수정실록』을 봉안하고 작성한 1657년 10월 19일 형지안과 상태주기사항 및 보관현황이 같은 것으로 보아, 이안과정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었던 것으

---

33) '표제명: 江華上 仁祖大王實錄形止案', 1653년 7월 1일, [규9684].

34) 병자호란으로 실록이 입은 피해와 그에 대한 수리·복원의 내용은 본 고 제1장 제3절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35) '표제명: 康熙五年正月十八日 實錄謄出奉安後形止案', 1666년 1월 18일, [규9689].

36) '표제명: 順治十七年十二月初三日 實錄移安新設史閣後形止案', 1660년 12월, [규9592].

37) '표제명: 康熙四十六年丁亥十一月日鼎足山上史閣移達實錄還安時形止案', 1707년 11월, [규9356].

38) '표제명: 嘉慶十八年三月日 史閣改建時實錄移安及曝曬形止案', 1813년 3월, [규9188].

로 보인다. 권말에는 이안사와 사관의 관직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707년 11월 환안형지안은 잠시 이동시켰던 실록을 다시 사고에 보관하고 작성한 형지안이다. 1707년(숙종33) 11월에 정족산사고의 사각을 이건(移建)하였는데, 이건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각 터가 좁고 음습하고, 바다 안개가 잘 끼며 땅이 평탄하지 못하여 (사각이) 손상되기가 쉽다."[39] 이에 새로운 터를 물색하여 사각에서 십여 보 아래쪽에 터를 잡아 사각을 이건하였다. 공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고, 11월 25일에 봉교 홍우서(洪禹瑞)가 실록을 이건된 사각에 환안하고 돌아왔다.[40]

또 다른 이안형지안은 1813년(순조13) 3월에 실록을 이안하고 작성한 형지안이다. 이 때의 이안 사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록이 없으나, 형지안의 표제가 '사각개건(史閣改建)'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유추해 보아 기존의 사각건물을 고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1707년 사각 이건 이후 1812년까지 17차례의 수개(修改)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고건물이 낡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지은 것으로 보인다.[41] 1813년 7월 17일 홍의호(洪義浩)는 장계를 올려 사각개건의 공역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각에 실록을 환안할 길일을 택일하도록 하라는 기사[42]가 나오는데, 현재 남아 있는 형지안 중에는 이 시기의 환안형지안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1819년(순조19) 윤4월에 포쇄를 진행하고 작성한 형지안과 내용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대로 환안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39) 『승정원일기』 숙종 33년 8월 5일 갑신조. "觀此江華留守黃欽狀啓 則史閣舊址 背陰挾穿 海霧長塞 地勢甚不便順 易致傷損(생략)".

40) 『승정원일기』 숙종 33년 11월 25일 계유조. "奉敎洪禹瑞 實錄還安後入來.".

41) 강문식, 「조선후기 강화사고의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제64집, 2013, p.174.

42) 『승정원일기』 순조 13년 7월 17일 신사조. "江華留守洪義浩狀啓(중략)以爲本府鼎足山城藏史閣改建及璿源閣修葺之役 俱爲告完.(중략)兩閣改建之役 今已告完 實錄及寶冊 還安 令各該司 擇日擧行.(후략)".

## 제 2 절 실록의 포쇄(曝曬)

포쇄는 서적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서 습기와 충해를 제거하는 전통적인 서적 관리 방법이다. 외사고는 산 속이나 섬에 설치되어서, 산 속에 있는 사고는 산안개가 항상 끼어 습도가 높은 환경이었다. 정족산사고와 같이 섬에 설치된 경우는 바다 습기와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장마로 인해 습도가 높은 환경으로 습도로 인한 피해는 항상 우려가 되는 바였다.[43] 그래서 포쇄는 사고에 보관된 기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관리 방법이다. 실록형지안을 작성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포쇄의 시행 횟수를 확인해 보면 다른 목적에 비해 포쇄가 가장 많은 것도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어서 사고를 여는 일이 있을 때, 상황이 된다면 포쇄를 함께 시행했기 때문이다. 포쇄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봉안이나 사각개수 등을 할 때도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포쇄를 시행하는 주기(週期)에 대해서는 몇 번의 변화가 있었는데, 조선초기에는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세종 때에 춘추관 사고의 문서 포쇄는 과거식년(科擧式年)에 의거하여 2년을 걸러서 진(辰)・술(戌)・축(丑)・미(未)년에 포쇄하게 되었고[44], 이 원칙은 지방 외사고에도 적용이 되었다. 『경국대전』에도 선왕의 실록은 3년마다 춘추관 당상관이 열어 살펴 포쇄하고, 지방 외사고는 사관만을 보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45] 조선 중기부터 사고의 포쇄주기는 2년에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주기가 짧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원고사』에는 "각처 사고의 실록 포쇄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라고 명시[46]되어 있고, 영조 대에는 "사관의 부족과 포쇄비용 조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사고의 포쇄를 2년 1회로 규정한다." 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47] 이후 1868년

---

43) 강문식, 앞의 글, 2013, p.184.

44) 『세종실록』 세종28년 10월 8일 임인조. "議政府據禮曹呈啓 春秋館史庫文書依科擧式年例 隔二年辰戌丑未曝曬 從之.".

45) 『경국대전』 禮典 奉審. "先王實錄 每三年 春秋館堂上官開審曝曬 外 則遣史官".

46) 『한원고사』 曝曬式. "各處史庫實錄曝曬每二年一次".

(고종5)에는 포쇄하는 일을 5년 1회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48]

이로 미루어 보아, 고종 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2~3년의 주기로 한 번씩 포쇄를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쇄형지안 조사목록[49]에서 살펴보면, 반드시 2~3년에 한 번씩 시행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포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파견할 사관의 부족으로 제때 포쇄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포쇄비용 및 물품 준비는 사고가 위치한 지역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흉년이 연속적으로 드는 경우에는 포쇄를 다음해로 미루거나, 사정이 나아지는 시기에 포쇄를 시행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몇 년씩 사정이 좋지 않으면 포쇄가 계속 미뤄지는 일도 있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봉안, 이·환안, 사각수개 등의 이유로 사고를 열 때 포쇄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포쇄 연한이 아직 안 되었는데도 봉안을 하고 포쇄를 한다던가, 장마 이후 사각을 수리하면서 보관하던 서적을 다 빼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포쇄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전자의 경우에는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포쇄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포쇄를 한지 1년도 안 되어 또 포쇄를 하는 경우가 생겼다.[50]

포쇄 시기는 가을철에 주로 시행했으며, 조사 목록을 살펴보면 음력 8, 9월에 많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음력 3, 4월 봄철이며, 여름과 겨울에 시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정족산사고가 설치되고 나서 시행된 포쇄는 총 59회이다. 왕대별 포쇄 횟수를 살펴보면, 현종 4회, 숙종 10회, 경종 2회, 영조 17회, 정조 2회, 순조 7회, 헌종 4회, 철종 4회, 고종 9회이다. 영조 대에 정족산사고 포쇄가 많이 시행되었는데, 재위기간 52년을 감안한다면 3.1년에 한 번씩 포쇄를 시행

---

47) 『승정원일기』 영조 3년 5월 6일 신유조. “(생략)顯有漏濕之氣 宜有年年曝曬之擧 而**史官無故行公之時甚罕 且曝曬時 雜物亦甚夥然 以間年爲式者** 蓋爲此也.(중략) 上曰 **間年曝曬 雜物所入 旣有流來定式 則不必追改** 實錄考出奉安時 一體曝曬事 所達誠是 以此分付本館 可也.”.

48) 『고종실록』 고종 5년 1월 25일 갑술조. “四處史庫所奉實錄 三年一次曝曬 卽典式攸在 日前 因史官所奏 已有成命矣 曾以沿路傳廚之弊 多有筵稟退行之例而每每煩請還涉惶悚 **自今爲始 曝曬之節 五年一次定式** 似好矣 允之.”.

49) 본 논문의 [부록 표 2] ‘강화사고 및 정족산사고의 포쇄형지안’ 참조.

50) 송기중 외, 앞의 책, 2005, pp.139-140.

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영조 대의 규정인 2년 1회 시행에 가장 근접하게 포쇄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조 대에 17회와 정조 대의 2회로 차이 나는 부분만 보더라도 영조 대에 실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51] 이러한 특징은 이후 다룰 사각수개에서도 잘 나타난다.

외사고에서 포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사관을 파견해야 한다. 사관이 사각에 도착하면 흑단령을 갖춰 입고, 실록각 앞에서 사배를 한 후 사고 문을 열고 서책 궤와 실록 궤를 열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포쇄를 할 때에는 승군이 서적들을 실록각의 뜰로 들어내어서 진행하였다. 실록각의 뜰에는 차일(遮日)을 쳐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에서 서책을 펼쳐놓고 습기를 말렸다. 포쇄 및 서책 점검이 끝나면 봉과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궤에 실록을 담았다. 포쇄가 끝나고는 사각 앞에서 사배를 하지 않는다. 봉과를 하면서 궤에 넣는 천궁과 창포 가루는 방충과 방습의 목적으로 넣는 것인데, 조선시대에 서적의 방충과 부식 예방 관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52]

천궁과 창포 가루의 방충 및 방습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기로 교체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탁지정례(度支定例)』[53]에 나온 정족산사고 포쇄 시 물목과 교체주기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면 [표 1][54]와 같다.

정족산사고 실록 궤에 넣는 물종은 궁궁말(芎芎末, 천궁가루), 창포말, 백포대 2건, 격차저주지 2장, 합봉표저주지 1장, 자물쇠 끈과 노루가죽 1장, 덮개용 유둔지, 장황용 붉은 실, 붉은 명주 보자기 등 총 9종이다. 홍주보(紅紬袱)만 5년에 1회 교체하고, 나머지 물품은 2년에 1회 교체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포쇄의 주기가 2년에 1회가 규정이었기 때문에 포쇄를 시행할 때마다 홍주보를 제외한 8종의 물품들은 교체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

51) 강문식, 앞의 글, 2013, p.187.
52) 배현숙, 앞의 책, 2002, pp.151-154.
53) 『탁지정례』 권 7, 예문관: 춘추관부, '江華鼎足山城史庫所藏實錄及 列聖御製御筆入盛櫝合六十一部 間一年曝曬時 每櫝所入'.
54) 강문식, 앞의 글, 2013, p.190의 <표 3> '『度支定例』 정족산사고 포쇄 시 소요 물목'을 참고하여 재작성한 것이다.

[표 1]『탁지정례』에 나타난 정족산사고 포쇄 시 물목

| 물목 | 궤당 수량 | 조달처 | 교체주기 | 비고 |
|---|---|---|---|---|
| 芎芎末 | 5되(升) | 강화부 | 2년 1회 | 춘추관사고 기준 수량. 천궁, 창포, 백포주머니 |
| 菖蒲末 | 3되(升) | | | |
| 白布岱 | 2건 | | | |
| 隔次楮注紙 | 2장 | | | 책 사이에 넣는 저주지 |
| 合封標楮注紙 | 1장 | | | 봉표용 저주지 |
| 合鎖鑰瓔子獐皮 | 1장 | | | 자물쇠 끈과 노루가죽 |
| 合盖覆肆油芚 | 13번(番) | 장흥고 | | 덮개용 기름종이 |
| 合粧結紅條所 | 2간의(艮衣) | 선공감 | | 장황용 붉은 실 |
| 紅紬肆幅袱 | 1건 | 제용감 | 5년 1회 | 붉은 명주 보자기 |

실록형지안은 2부가 작성되어 1부는 해당사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춘추관 사고에 보관하여 같은 형지안을 양쪽에서 보관하였다. 이는 정족산사고형지안 중 고출형지안 1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44년(영조20) 9월에 고출하고 작성한 [규9476], [규9232][55] 형지안 2책은 표제명이 '乾隆九年甲子九月日 鼎足山城 實錄考出時形止案'이다. 같은 날짜, 같은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고출형지안들은 한 책은 춘추관사고용이고, 나머지 한 책은 정족산사고용이다. [규9476] 표제에는 '정족산성' 아래쪽에 '本館上'이라고 작게 표시되어 있다. 이는 형지안을 작성할 때 동일한 내용, 제목으로 2책을 작성하고 1책은 형지안이 작성된 사고에 보관을 하고, 다른 1책은 本館(춘추관)에 보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745년(영조21) 9월 포쇄형지안의 '형지안秩'에도 '甲子九月日實錄考出形止案 一'로 1책만 정족산사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1건의 사례로 모든 형지안이 2부씩 작성되어 각각 사고와 춘추관사고에 보관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추후 형지안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사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족산사고 포쇄형지안의 작성 형식을 살펴보면, 표제명을 쓰고 실록

55) 2책의 형지안은 날짜와 표제명이 동일하여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규장각 소장번호로 지칭한다.

의 보관 현황을 기록한 후에 일반서책에 대한 관리현황을 적고 담당한 사관의 관직명과 이름을 썼다. 표제명을 살펴보면, '중국연호OO년 갑자 O월O일 OOOO형지안'의 형식으로 대부분 작성이 된다. 내제의 경우도 다르지 않으나, 형지안의 유형 앞에 사고명을 표기한다. 표제에 사고명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작성하는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족산사고 설치(1660년)이전의 형지안에는 '강화' 또는 '강화부'로 사고명이 기록되었다가, 정족산사고가 완공 후부터 '정족산'이라는 사고명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용부분에서는 궤 번호를 쓰고 '실록명, 自OO권至OO권 O책'으로 적다가, 1654년(효종5) 형지안부터 '실록명, 권번호, 실록상태 표시'의 형식으로 쓰고 있다. 이어서 일반 서책 부분은 천자문 순서로 궤 번호를 부여하고, '서명 O책 또는 O권'으로 기록하고 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서명 위에 첨지를 붙여서 입고된 현황을 표시하거나 '상경(上京)', '상본관(上本館)' 등을 써서 이동된 상황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권말에는 포쇄를 위해 파견된 사관의 관직명, 성명, 착압을 기록해 놓았다.

[그림 1] 정족산사고 포쇄형지안

| '표제명: 嘉慶二十四年己卯閏四月日 鼎足山城 史閣上 列聖朝實錄曝曬形止案' 1819년(순조19) 윤4월 [규9371] (규장각 소장)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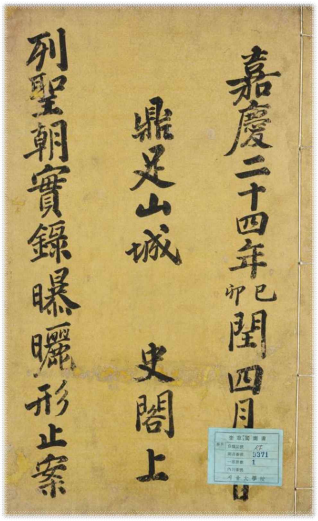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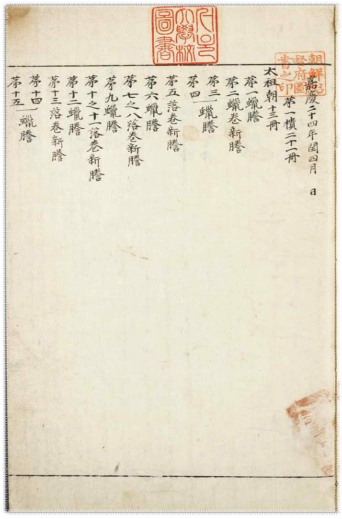 |

1629년 4월 포쇄형지안[56]의 실록 부분에서 제28궤와 제36궤에는 '內岱一無 癸酉七月二十六日曝曬時新備入櫝' 라고 주기되어 있다. 궤 안에 주머니가 1개가 없어서 계유년(1633년) 7월 26일 포쇄를 진행할 때 새로 준비해서 궤에 넣었다는 것이다. 3년 후인 1633년 7월 26일 포쇄형지안[57]에서는 이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1633년 포쇄 할 때는 이미 새로 넣었기 때문에 주기를 하지 않고, 이전의 포쇄형지안에 내용을 추가하여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머니는 천궁, 창포가루 주머니를 말하는 것인데, 교체되는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아 다음 포쇄 작업 시 교체를 한 것을 의미한다.

포쇄가 진행되면서 실록의 상태조사도 함께 진행했는데, 포쇄형지안에 주기되어 있거나 첨지가 붙은 것들이 상태조사내용이다. 보통 주기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포쇄 시 변화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다시 주기를 했다. 하지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주기 사항을 쓰고, 그 밑에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 이상이 있었던 사항이 개선되어 포쇄 시 이상이 없다면 주기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새로 사고에 들어오는 서적들에 대해서는 서적의 제목을 쓰고, 그 밑에 언제 입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주기해 놓았다.

포쇄형지안의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벌레에 의한 피해 사실 주기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의 기록관리에서 습도는 항온항습기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오히려 벌레나 쥐에 의한 손상이 일어난다. 벌레, 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에 한 번씩 훈증 소독을 하거나 저산소농도 살충을 진행하여 해충의 유입을 막고, 유입이 되더라도 최대한 책에 해가 미치지 않도록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시대 사고는 나무 건물이고 습한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금보다 벌레나 쥐에 의한 손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환경이었다.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벌레나 쥐 등 서적에 해를 가하는 생물들이 들어오고 나가기 더 쉬운 환경이었다. 실록형지안에 주기되어 있는 상태를 검토해 보면 습기에 의한 손상이나 종이가 찢어지는 물리적 손상 등은 보여도 벌레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포

56) '표제명: 崇禎二年己巳四月十五日 實錄曝曬形止案', 1629년 4월 15일, [규9443].
57) '표제명: 崇禎六年癸酉七月二十六日 實錄曝曬形止案', 1633년 7월 26일, [규9598].

쇄와 천궁, 창포가루의 교체에 의한 효과가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내용은 현대의 기록관리에 있어서도 참고해 볼만 한 사항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생물학적 피해도 보이지 않는 것은 기록물의 중요도만큼이나 보존관리가 잘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실록형지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장서점검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사고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몇몇 형지안에서는 이러한 관리가 형식적인 정기점검이었을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문종실록』 11권의 기록이다. 전주사고본 실록이 묘향산사고에서 보관되어 있던 당시에 이미 『문종실록』 11권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다. 표지에는 "제11권"이라고 되어 있으나 안에는 "제9권"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9권은 따로 더 있는 상황이었다.[58] 하지만 이 내용은 실록에도 기사로 실릴 정도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1601년(선조34) 9월에 작성된 묘향산사고 포쇄형지안[59]에는 주기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 이러한 사항은 강화사고의 포쇄, 봉안형지안까지 계속 변함없이 그대로 권 번호가 있다가, 1654년(효종5)에 강화사고 실록의 피해상태조사가 진행되면서 처음 낙권으로 아예 11권이 기록되지 않는다.[60] 그 이후에는 11권은 기록되지 않고, 9권 또한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기되지 않는다. 이는 포쇄나 고출, 봉안 등 장서점검을 할 때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이전의 형지안을 그대로 베껴 썼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런 경우처럼 숫자나 갑자년을 오기(誤記)하였음에도 몇 년간 오기가 수정되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첨지가 붙은 경우는 다음의 형지안에서도 글씨체만 다른 동일 내용의 첨지가 붙어 있는 사례가 있다. 꼼꼼하게 장서점검을 진행하여 기록된 형지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형지안도 있는 것으로 보아, 파견되는 사관 중에 형식적으로만 상태점검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58) 『선조실록』 선조 33년 8월 29일 기해조. "臣以**香山實錄考出事**(중략)適見文宗大王朝實錄一編 其粧外面 題曰第十一卷 而觀其內 第九卷也 **九卷則疊有之十一卷全無** 此必當初印出分藏之際 籤秩錯(訒)而相換也(후략)".

59) '표제명: 萬曆二十九年辛丑九月初十日 史庫曝曬形止案', 1601년 9월, [규10005].

60) 본 논문의 제1장 제3절 '실록의 수보'에서 다루고 있는 [규9545]형지안이다.

## 제 3 절 실록의 수보(修補)

1636년(인조14)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강화사고에 보관하던 실록의 상당부분이 산실(散失)되었다.[61] 1644년(인조22) 8월에 영춘추관사 김류(金瑬)가 강화사고본 실록과 춘추관본 실록을 합쳐 완질을 만들 것을 제의하면서부터 실록의 수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 봉교 심세정(沈世鼎)의 강화사고 현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열성(列聖)의 실록 및 노산군(魯山君)·연산군일기가 모두 1천 25권인데, 완전히 없어진 것이 1백 48권이고 장(張)이 떨어져 나간 것이 1백 67권이고, 광해군일기는 완전히 없어진 것이 65권, 장이 떨어져 나간 것이 2권이며, 신유년(1621년, 광해군13) 8월 이후의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갈 권수의 다소(多少)조차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다.[62] 춘추관에서는 누락된 실록은 무주 적상산본 실록을 등서하여 복원하자고 요청했으나, 중국 사신 파견과 흉년 등의 이유로 연기되었다.

1653년(효종4)에 강화사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실록 2권이 소실되었고[63], 다음해인 1654년(효종5)에 실록 상태 점검과 함께 『실록봉안후형지안』[64]이 작성되었다. 현전하는 정족산사고 실록형지안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주사고본 실록의 피해 상황 및 상태에 대한 주기가 있는 형지안이다. 다음의 [표 2]는 1654년부터 1699년간에 걸친 실록수보와 관련한 형지안 9건이다.

---

61) 『인조실록』 인조 15년 2월 27일 정유조. ""江都之變 本館實錄 時政記之移置者 盡皆散失 其時書吏一人 收拾若干卷 還置庫中.".

62) 『인조실록』 인조 22년 8월 27일 임오조. "奉敎沈世鼎自江華還 奏言 列聖實錄及魯山 燕山日記 竝一千二十五卷內 全無者一百四十八卷 落張者一百六十七卷 光海日記則全無者六十五卷 落張者二卷 辛酉八月以後則全無 故其間卷數之多少 未能知之矣.".

63) 『효종실록』 효종 4년 11월 6일 무술조. "江華 史閣失火 實錄二卷及儀軌諸冊皆燒.".

64) '표제명: 江華史庫上 順治十一年十月日 實錄奉安後形止案', 1654년 10월, [규9545].

[표 2] 정족산사고의 실록수보형지안

| 연번 | 표제명 | 시기 | 세부내용 | 형지안 소장번호 |
|---|---|---|---|---|
| 1 | 江華史庫上 順治十一年十月日實錄奉安後形止案 | 1654년 10월 (효종5) | 실록상태조사 | 규9545 |
| 2 | 順治十七年十二月初三日 實錄移安新設史閣後形止案 | 1660년 12월 (현종1) | 정족산사고로 이안 | 규9592 |
| 3 | 康熙二年九月十二日實錄曝曬形止案 | 1663년 9월 (현종4) | 수보작업 직전 포쇄형지안 | 규9564 |
| 4 | 史閣上康熙三年九月初四日實錄曝曬及改張時形止案 | 1664년 9월 (현종5) | 개장(改張) | 규9544 |
| 5 | 康熙三年十一月初九日實錄改櫝入盛形止案史閣上 | 1664년 11월 (현종5) | 개궤(改櫝) | 규9550 |
| 6 | 康熙三年十二月日實錄改絲時形止案史閣上 | 1664년 12월 (현종5) | 개사(改絲) | 규9713 |
| 7 | 史閣上康熙四年九月日落卷考出時形止案 | 1665년 9월 (현종6) | 낙권고출 (落卷考出) | 규9552 |
| 8 | 康熙五年正月十八日實錄謄出奉安後形止案 | 1666년 1월 (현종7) | 실록등출봉안 | 규9689 |
| 9 | 史庫上 康熙三十八年四月日 實錄染蠟及修補時形止案 | 1699년 4월 (숙종25) | 실록염랍수보 | 규9365 |

1654년 10월의 보존 실태 조사 직후 실록의 수보작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1660년에 새로 설치된 정족산사고로 실록이 이안되었다. 이때 작성된 1660년 12월 이안형지안에도 1654년 10월 형지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주기가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주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落卷: 따로 주기되어 있지 않고, 실록의 권(卷) 번호 생략
- 無衣: 표지가 없는 것
- 衣破·破衣: 표지가 찢어진 것
- 有落張: 낙장(落張)이 있는 경우
- 破張: 책장이 찢어진 경우
- 泥汚: 흙 등의 이물질 오염

· 雨腐, 雨漏破腐: 비로 인한 손상
· 火灾: 화재 흔적이 있는 것
· 腐汚, 腐朽: 썩고 오염되었거나, 흙이 묻어서 썩은 부분이 있는 것
· 不辨字: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新件, 黃粧衣: 선조 대 복인본인 춘추관사고본 실록을 말하는 것
· 舊件, 靑粧: 전주사고본 실록을 말하는 것
· 疊入: 같은 권으로 다른 사고본이 중복되는 경우
· 腐朽改書次: 오염·습해로 인한 것으로 다음에 등서해야 하는 경우

전주사고본 실록은 청(靑)비단 표지와 내지는 밀랍처리가 되어 있다. 반면에 선조 대 복인본은 황지(黃紙) 표지에 내지는 밀랍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로 '靑粧'은 전주사고본을 지칭하고, '黃粧衣'는 복인본 춘추관사고본 실록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기 사항은 각 권에 '무의유낙장(無衣有落張)', '파의유파장(破衣有破張)', '무의화재(無衣火灾)'와 같은 형태로 기입되는 경우도 있다.

합부(合部)의 경우는 여러 권을 합쳐 묶은 경우를 말하는데, 대개는 춘추관사고본 실록을 뜻한다. 전주사고본 실록은 대부분 1권 1책으로 되어 있고, 춘추관사고본 실록은 여러 권을 1책으로 묶었기 때문에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自六十二之四卷合部一冊疊入'으로 주기되어 있으면, 62권부터 64권까지 1책으로 묶인 것이 중복되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종실록』12권에 주기된 사항 중에 '黃粧靑粧合成一卷長短不齊'가 있는데, 황장과 청장을 1권으로 합친 것으로 길이가 다르다는 의미이다. 이것으로 전주사고본 실록과 춘추관사고본 실록의 크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실록의 수보작업은 1664년부터 1665년까지 차례로 진행하여 1666년(현종7) 등서본 실록이 봉안되면서 1차 수보작업은 마무리된다. 먼저 1664년 9월 가을에 훼손된 표지의 실록에 대해 황장의(黃粧衣)로 개장(改粧)을 진행하였다. 1664년 9월 4일 형지안[65]에는 이전 형지안에서 무의, 파의

65) '표제명: 史閣上 康熙三年九月初四日 實錄曝曬及改粧時形止案', 1664년 9월 4일, [규9544].

[그림 2] 정족산사고 실록형지안의 실록상태 주기(註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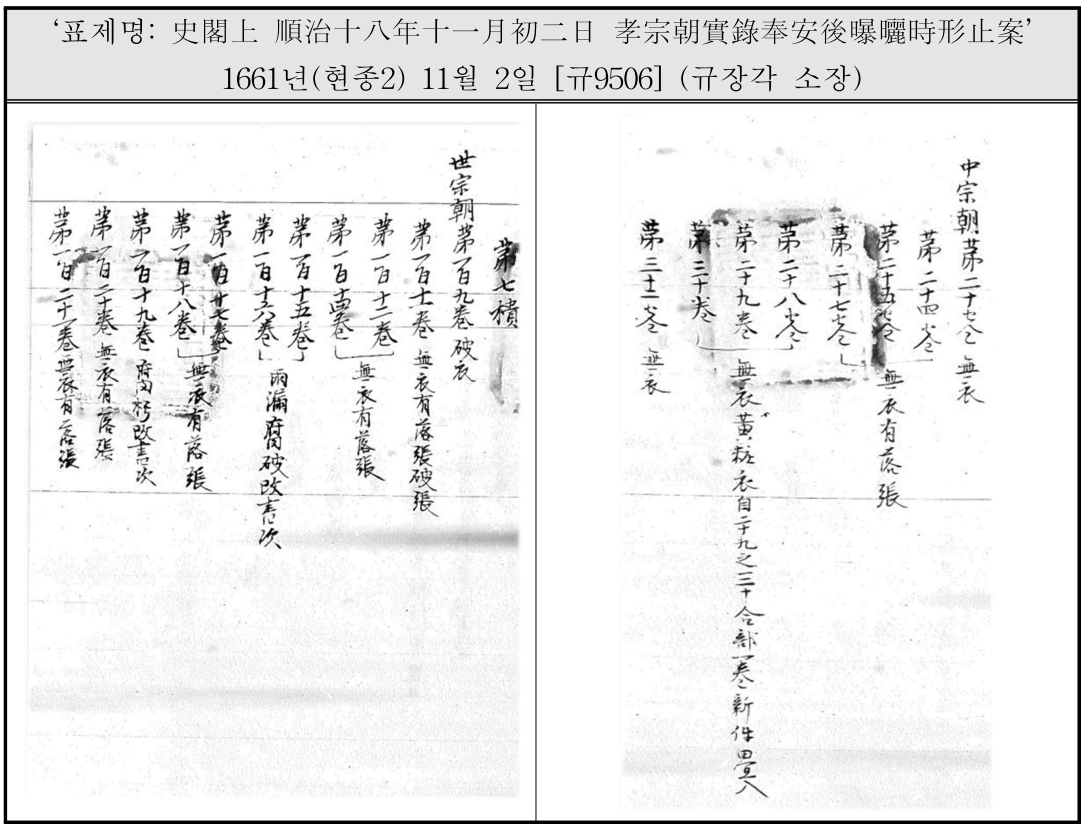
‘표제명: 史閣上 順治十八年十一月初二日 孝宗朝實錄奉安後曝曬時形止案’
1661년(현종2) 11월 2일 [규9506] (규장각 소장)

등으로 표지 손상이 있었던 건은 모두 ‘甲辰秋黃衣改粧’이라고 주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장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각 실록 궤마다 ‘紅袱藥末布帒具’ 또는 ‘紅袱藥末布帒具新件’로 주기되어 있다. 붉은색 보자기와 천궁과 창포가루 주머니를 갖추어 궤마다 넣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교체작업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수보 후 실록을 궤에 담는 과정은 포쇄와 동일하다. 권말에는 ‘紅紬袱四十六內舊件七新件三十九’, ‘油芚九部新件覆蓋’라고 기록하여 실록궤 46개 중에서 붉은 보자기를 7개는 재사용하고, 39개는 새로 교체하며, 유둔 9부도 새로 구비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실록궤를 교체하였다. 당시의 형지안인 1664년 11월 9일 형지안[66]에는 실록궤 교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

66) ‘표제명: 康熙三年十一月初九日 實錄改櫝入成形止案史閣上’, 1664년 11월 9일, [규9550].

한 교체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실록 부분의 마지막에 '以上實錄四十二櫝'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 개장(改粧)작업 시에는 46궤이었던 것이 42궤로 4궤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이어서 '每一櫝'에 들어가는 물목을 나열하고 있다. 물목은 홍주보 1건, 백포주머니(白細布甲帒) 2건, 초주지(上下隔草注紙) 2장, 창포·천궁가루, 자물쇠와 사슴가죽 끈(鎖鑰鹿皮纓子), 덮개용 유둔(盖覆油芚) 6張付9浮[67]이다. 9월에 홍주보와 약재 주머니를 교체하고 2달 뒤에 또 다시 교체를 하기에는 물품 준비가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물목은 9월에 홍주보와 약재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소요된 물목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같은 해 12월 겨울에는 개사(改絲)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형지안은 1664년 12월 '실록개사시형지안(實錄改絲時形止案)'[68]이다. 형지안의 실록 목록에 적힌 내용은 앞에서 이어져 오고, 실을 교체한 권에만 '甲辰冬改絲'라는 주기를 써 놓았다. 그리고 실록궤에 들어가는 물목 중에서 덮개용 유둔이 6張付2浮로 수정이 되어있다. 이 작업을 끝으로 실록의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수리작업은 완료되었다.

다음으로 진행된 실록수보작업은 낙권과 낙장의 등서작업이다. 낙권과 낙장의 등서작업에 대한 논의는 1664년 11월에 검열 이선(李選)이 포쇄와 개궤(改櫝)를 위해 정족산사고를 다녀와서 올린 서계(書啓)에서 제의가 된다. 여기서 이듬해 정월에 적상산사고 실록을 서울로 가져와서 등서하는 것으로 결정된다.[69] 하지만 실제로 작업은 1665년(현종6) 9월이 되어서야 낙권과 낙장의 현황을 다시 조사하여 등서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이때 작성된 형지안이 1665년 9월 고출형지안[70]이다.

---

67) 유둔(油芚)은 기름을 먹인 종이로 궤를 덮어서 궤 외부에서 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기능을 했다. 1장의 크기가 작아서 보통은 4장이나 6장을 이어 붙여서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6장을 이어붙인 9부의 유둔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되나, 유둔을 세는 단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단위는 한자로 표기하였다. 이후 형지안에서는 2부로 수정된다.

68) '표제명: 康熙三年十二月日實錄改絲時形止案史閣上', 1664년 12월, [규9713].

69) 『현종실록』 현종 5년 11월 23일 경술조. "**史官李選書啓中 江都所藏列聖實錄未完卷帙補缺事** (중략) 右相許積曰 國家史記甚重不可顧念他弊 外方所藏實錄 不可不趁卽奉來 傳寫補缺. 上曰 **明年正月赤裳所藏奉來傳寫.**".

[그림 3] 실록수보 주기와 한 궤당(每一櫃) 물목

| ‘표제명: 史閣上 康熙四年 九月日 落卷考出時形止案’<br>1665년(현종6) 9월 [규9552] (규장각 소장) | |
|---|---|
| 甲辰秋改粧, 甲辰冬改絲 | 每一櫃 物目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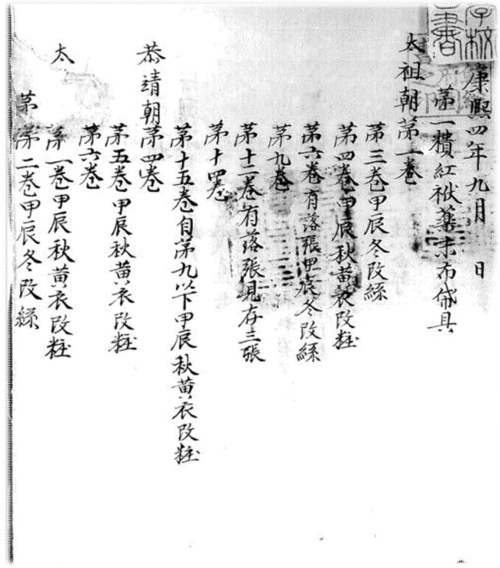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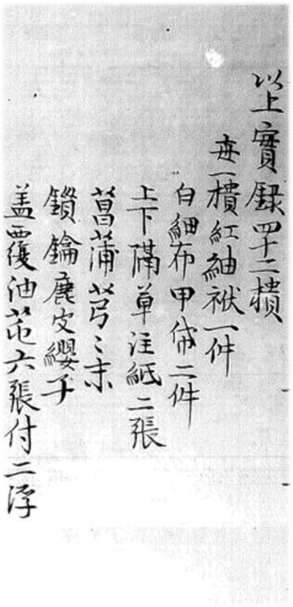 |

이전에 작업한 수보상황을 그대로 주기하고 있으면서 낙장이나 낙권이 있는 권에만 ‘有落張’, ‘有落卷’이라고 주기하고 있다. 그리고 10월 9일에 동춘추(同春秋) 이상진(李尙眞)과 대교 최후상(崔後尙)은 실록등출을 위해 무주로 파견된다.[71] 등출작업은 10월 21일에 시작하여 12월 19일에 완료되었다.[72] 이상진과 최후상은 등서본을 1666년(현종7) 1월 18일에 정족산사고에 봉안하고, 1월 21일에 최후상은 실록봉안을 마치고 돌아온다.[73] 이 때 봉안을 하고 작성한 형지안은 1666년 1월 ‘실록등출봉안후형지안’[74]이다.

---

70) ‘표제명: 史閣上康熙四年九月日落卷考出時形止案’, 1665년 9월, [규9552].

71) 『승정원일기』 현종 6년 10월 9일 신유. “同春秋李尙眞 待敎崔後尙 實錄謄出事 茂朱地出去”.

72) 이상진, 「赤裳山城實錄謄出校同苦錄記序」, 『적성지(赤城誌)』 5권. “始自十月廿一日告訖于十二月九日 編次粧成載以彩輿發向江華”.

73) 『승정원일기』 현종 7년 1월 21일 임인. “待敎崔後尙 實錄謄出後入來.”.

1666년 1월 형지안에서는 주기사항이 이전과 달라진다. 기존에 개사(改絲), 개장(改粧)을 진행하고 작성한 내용은 빠지고, 낙권신등(落卷新謄), 낙장신등(落張新謄), 양소(樣小)등으로 주기된다. 낙권신등은 낙권 전체를 등서한 경우, 낙장신등은 낙장만 등서한 경우를 말한다. 양소(樣小)는 크기가 작은 것으로 선조 대 복인본 춘추관사고 실록을 말한다. 등서해 온 실록만 실록궤에 넣으면 되어서 새로 봉안하는 실록이 없는 궤에는 '不開'라고 주기 되어 있으며, 열었던 실록궤 번호 밑에는 책수를 기록해 놓았다. 실록 목록이 끝나면 첩권질(疊卷秩) 3궤에 대한 내용이 있다. 첩권질은 중복된 실록으로 한 질의 실록에서 제외된 실록을 모아 놓은 것이다.[75] 3궤에는 각각 양대(樣大) 24책, 양소(樣小) 44책과 산장(散張) 152장이 들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대는 양소와 반대로 크기가 큰 것으로 전주사고본 실록을 말하는 것이고, 산장은 전주사고본 실록의 낱장을 의미한다. 이 작업을 끝으로 정족산사고의 1차 실록수보 작업은 마무리된다. 정족산사고에 실록이 이제 거의 완질에 가깝게 보관을 하게 되었으나, 『문종실록』11권은 모든 사고에 없기 때문에 보결(補缺)하지 못하는 점과 낙자(落字)·오자(誤字)가 매우 많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쉽다는 평가이다.[76]

2차 수보작업은 1699년(숙종25) 4월에 진행되는데, 이때 작성된 형지안이 1699년 4월 형지안[77]이다. 그러나 이 형지안에서는 표제가 '염랍(染蠟)수보'로 적혀 있어서 형지안의 목적 확인이 가능할 뿐이지, 실록부분에는 수보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1701년 10월 형지안[78]

---

74) '표제명: 康熙五年正月十八日實錄謄出奉安後形止案', 1666년 1월 18일, [규9689].

75) 첩권이 생기는 것은 손상이 있는 실록에 대해서 온전한 춘추관사고본 실록이 있으면 춘추관사고본으로 대체를 하고, 낙장이 없어도 춘추관사고본 실록으로 대체된 경우도 있다. 손상된 장(張)은 적상산사고본 실록을 등서하여 보관하고 원래의 장은 '산장' 궤에 보관한다.

76) 『현종실록』 현종 7년 1월 9일 경인. "同知春秋李尙眞等奉安謄書實錄于江都史庫 實錄落卷落張之數 合三百餘卷. **江都實錄 始爲稍備 而文宗朝實錄一卷 諸處史庫皆缺 故不得謄出補缺 其他落字誤字甚多 釐正猶有未盡 是可恨也**.".

77) '표제명: 史庫上 康熙三十八年四月日 實錄染蠟及修補時形止案', 1699년 4월, [규9365].

부터는 염랍사항을 주기하고 있어서 수보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수보사항에 대해서는 『태조실록』부터 『광해군일기』까지 주기가 되어 있고, 염랍에 대한 사항은 『명종실록』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염랍의 작업은 전주사고본 실록에 한해서만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지안에 주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납등(蠟謄)은 염랍을 한 등서본으로 태조에서 태종 대의 실록에 보이고, 납인(蠟印)은 염랍을 한 인쇄본으로 세종부터 명종 대의 실록에 주기되어 있다. 양소인(樣小印)은 춘추관본의 인쇄본으로 염랍은 진행하지 않았다. 신등(新謄)은 필사본으로 『선조실록』 중 효종 대에 필사한 13책과 『광해군일기』에서 보인다. 이는 아마도 1666년 등서본과 구분하기 위한 표시로 보인다.[79]

## 제 4 절 사각수개(史閣修改)

실록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포쇄와 상태점검과 같이 실록 자체에 대한 관리도 필요로 하지만, 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사각(史閣)의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건물 손상으로 인해 보관하고 있는 기록들에 비 피해나 습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각의 환경을 관리해 주는 것도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사각 건물에 손상이 생기면 사고 수직(守直)을 담당하는 관원이 강화유수(留守)에게 보고하고, 강화유수는 장계를 올려 중앙에 보고를 하였다. 중앙에서는 사관을 파견하여 손상상태를 파악하고, 보관하던 서적들을 손상이 가지 않을 곳으로 이안한 후에 사각수개를 진행하였다.[80]

수개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가 새거나 물이 스며들어 나무로 된 서까래나 마루판이 파손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런 부분은 사각이 섬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여름철 장마의 영향으로 정

78) '표제명: 江華府 史庫上 康熙四十年辛巳十月 實錄閣修改及曝曬時形止案', 1701년 10월, [규9462].
79) 송기중 외, 앞의 책, 2005, p.119.
80) 강문식, 앞의 글, 2013, p.179.

족산사고가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각수개형지안이 자주 작성된 시기를 보면 전체 18건 중 영조 대에 11건이 보이는데, 이 시기에 특별히 비나 습기로 인한 피해가 심해져서 수개를 자주 진행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영조 대에 사고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은 손상 사실에도 보고를 하고 사관을 파견하여 수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영조 대에는 정족산사고 수직(守直)을 강화부 별장(別將)에서 사고 참봉직을 신설하여 참봉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맡게 하였다. 또한 사고 수직에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하기도 하였다.[81] 이는 기록의 관리에 있어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 및 환경의 관리도 필요하며, 관리자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사각의 수개가 진행된 시기를 살펴보면 4월 1건, 6월 3건, 7월 2건, 8월 6건, 9월 2건, 10월 4건으로 대부분 6~10월에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름철 장마의 영향으로 사각에 비가 새거나 건물에 손상이 생겨서 가을철에 사각수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사각수개가 진행되는 시기가 가을철이고, 보관하던 서적들을 사각에서 빼는 작업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포쇄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족산사고는 1660년(현종1)에 완공되고 나서 1701년(숙종27)부터 사각수개와 관련된 형지안을 찾아볼 수 있다. 총 18건으로 [부록 표 3] '정족산사고의 사고수개형지안'과 같다.

사각수개형지안의 작성형식은 기본적으로 포쇄형지안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이유로 형지안의 표제를 통해서만 형지안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형지안의 내용에서는 사각수개를 하는 이유와 어느 부분이 수리가 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서는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통해 정족산사고 수개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82]

가장 앞선 시기의 1701년(숙종27) 10월의 사각수개는 사각 정간(正間)의 서까래(椽木)가 부러져서 진행이 되었다. 이보다 앞서 강화유수 김석

81) 강문식, 앞의 글, 2013, p.183.
82) 위의 글, 2013, pp.180-181의 <표 1>에 정리된 기사 내용을 참조하였다.

연(金錫衍)이 장계(狀啓)를 올렸으나 당시에 사관이 없어서 강화부(本府)에 수개할 인력과 물력(人物力)을 준비해 놓도록 하였다. 그리고 10월에 이르러 사관 1명을 보내서 수개와 포쇄를 진행했다.[83] 사각수개와 포쇄를 진행하고 작성한 형지안이 1701년 10월 사각개수와 포쇄형지안이다. 이후에 1707년(숙종33) 사각 이건[84]이 진행된 후에는 한 동안 사각수개 관련 형지안은 보이지 않다가, 1713년(숙종39) 6월에 사각의 비새는 곳을 수리한 후에 작성한 1713년 수개형지안[85]이 있다.

1734년(영조10) 4월에는 대교 정이검(鄭履儉)이 사고에 파견되어 4월 4일에 서적을 별당으로 이안한 후 수개를 진행하였다. 사각 제2칸 뒤쪽 섬돌이 석축이 아니어서 지면 습기가 위로 올라와 기둥 하단부가 썩고 마루가 내려앉았다. 제 1, 3칸의 기둥도 대부분 손상되었고 도리(道里)도 기울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벽을 허물어 썩은 기둥과 마루판을 모두 뜯어내고 갈아 끼우고, 파손된 기와를 새로 개비하고 건물 내의 회칠을 보수하였다. 사각의 지세가 낮아 산수가 스며든다는 점에 주목하여 섬돌에 석축을 쌓고 물고랑(隱溝)을 설치하였다. 4월 17일에 서적을 환안(還安)한 것으로 수개 작업을 완료하였다.[86] 이 수개 작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

83)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0월 4일 정사조. "曾因江華留守金錫衍狀啓 史閣正間椽木折傷處 卽當下送史官奉審 而適無見存史官 故令本府修改 所入物力預爲措備待候之意 定奪矣. 今則寒節漸近 不可不趁此時 急速修改 史官一員卽爲下送 以爲奉審之地 而外面所見修改處 如此 則史記 亦不可不看審曝曬 以此意史官處 亦爲分付 何如? 傳曰 允.".

84) 정족산사고 사각 이건(移建)과 관련된 형지안은 본고 1장 1절의 내용 참조.

85) '표제명: 鼎足山上 康熙五十二年癸巳六月二十八日 史閣雨漏處修改形止案', 1713년 6월 28일, [규9657].

86)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4월 20일 을축. "待敎鄭履儉啓曰 臣承命祗詣于江華府鼎足山史閣 以四月初四日 奉出列聖實錄五十二櫃 燕山君日記四十六卷 光海君日記三櫃. 權安于別堂後史閣北邊第二間廳板耳機低凹處 詳細奉審 則史閣基址本甚低下 而後面階砌 不爲石築 山水滲入 濕氣上侵 柱木下端二尺許 腐傷無力 以致耳機凹陷. 廳板缺落 而不但第二間如此 第一間·第三間柱木擧皆受傷 耳機蹲縮 道里之屬 亦隨而傾仄. 故壞其墻壁 撑起屋簷 柱木腐傷處擧皆截去 以新木補之. 耳機及廳板之朽破者 亦以他木改葺 後面左右階砌 用石堅築 又置隱溝 然後改築墻壁. 蓋瓦亦多有傷缺處. 故一一改覆 樑上所塗之灰

형지안은 1734년 4월 형지안[87]이다. 뒷부분에 대교 정이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사각수개처(史閣修改處)의 소요물목과 수리내용

| ‘표제명: 雍正十二年四月日 鼎足山城 史閣修改形止案’ 1734년(영조10) 4월 [규9528] (규장각 소장)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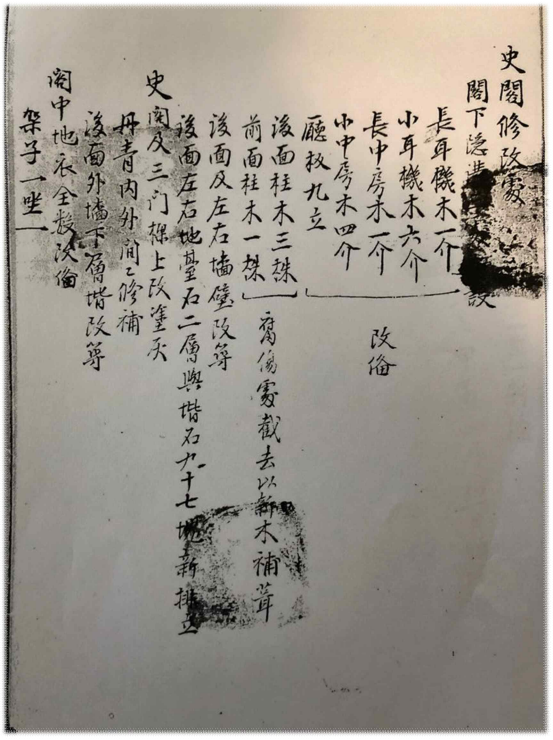 |

이 형지안에서 특이한 점은 관원이름이 있는 부분 권말에 ‘사각수개처(史閣修改處)’가 기록되어 있다. 사각수개 시 사용한 물목과 수리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다른 형지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아마도 다른 사각수개의 경우보다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작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 아래 3군데에 물고랑을

剝落無餘 故一竝改塗 閣中鋪陳 渝破已甚. 故全數改造 前面外退第一柱 亦爲風雨所侵 未免朽傷 故一體改備. 以**今十七日還爲奉安** 而史間守衛一節 極爲虛疎不可不變通.(후략)”.

87) ‘표제명: 雍正十二年四月日 鼎足山城 史閣修改形止案’, 1734년 4월, [규9528].

신설(閣下隱溝三處新設)하였고, 장이기목(長耳機木) 1개, 소이기목(小耳機木) 6개, 장중방목(長中房木) 1개, 소중방목(小中房木) 4개, 마루청(廳板) 9立[88]은 개비(改備)했다. 후면의 기둥 나무(後面柱木) 3주(株), 전면의 기둥 나무(前面柱木) 1주의 썩고 상한 부분은 잘라내고 새 나무로 보완하여 고쳤다(腐傷處截去以新木補葺). 후면과 좌우 담장은 고쳐서 쌓고, 지대석 2층과 섬돌 97개를 새로 쌓아서 물고랑을 완성하였다. 사각의 들보에 회칠을 다시 하고, 단청도 수보했으며 후면 바깥 담장 아래 층계를 고쳐 쌓았다. 사각 내에 있는 돗자리는 전부 교체하였다. 가자와 제명록궤 1좌(坐)도 새롭게 구비해놓았다.[89] 작성된 내용은 『승정원일기』의 기사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88) 이기(耳機)는 귀틀로 마루청을 놓기 전에 먼저 가로 세로로 짜 놓은 나무이다. 청판(廳板)은 마루청이다.

89) 1734년 4월 사각수개 형지안 [규9528] 권말 '사각수개처(史閣修改處)', "(본문에 있어서 생략함) 後面及左右墻壁改築 後面左右地臺石二層與階石九十七砌新排立 史閣及三門樑上改塗灰 丹靑內外間-修補 後面外墻下層階改築 閣中地衣全數改備 架子一坐一 題名錄所盛櫝子一坐 新備".

# 제 2 장 실록형지안에 나타난 고출과 관리

## 제 1 절 고출(考出)의 배경과 추이

고출(考出)이란 조정에 대사가 있을 때 전례를 참고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관을 파견하여 실록이나 서적 등에서 필요한 기사를 초록해 오는 것을 말한다.[90] 조선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국가의 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전이나 담당부서의 등록(謄錄)에서 전례(典禮)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진행을 하였다. 하지만 적합한 전례를 찾지 못하면 실록에서 선례(先例)를 찾아서 모범을 삼았다. 실록은 사관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는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보존 뿐만 아니라 정책참고용으로 후대에 열람이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전기에는 춘추관사고에 봉안되었던 실록을 고출하였는데, 임진왜란 후에는 전주사고본 실록이 봉안되어 있던 묘향산, 영변, 강화 등으로 사관이 파견되어 고출을 하였다. 실록을 복인(復印)한 후에는 춘추관사고에 다시 실록이 봉안되어 춘추관에서 고출이 이루어졌지만, 이괄의 난과 궁궐 화재 등으로 춘추관사고 실록 다수가 산실된 후에는 지방 외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고출할 수밖에 없었다. 병자호란으로 강화사고의 실록도 많은 피해를 입어 남아있는 춘추관사고본과 전주사고본을 보완하여 합쳐도 완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주사고본 복인본 실록이 있는 무주 적상산 사고에 사관을 파견하여 고출을 진행하였다.

1666년(현종7) 정족산사고 실록의 낙권과 낙장의 등서한 실록이 정족산사고에 봉안이 된 이후부터는 다시 정족산사고에서 실록을 고출할

90) 배현숙, 앞의 책, 2002, p.283.

수 있게 되었다.[91] 서울에서 거리가 먼 다른 지방 외사고(태백산, 오대산, 적상산)는 고출하러 가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까운 정족산사고를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정족산사고의 고출관련 형지안이 다른 외사고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된다.[92]

지방의 외사고로 고출을 갈 때는 관상감에서 길일을 택하고, 당상과 한림 등 총 2명을 파견하였다. 당상이 파견갈 수 없는 일이 있으면 한림 1명만 파견이 되기도 한다. 나머지 절차는 포쇄를 진행할 때와 동일하다.[93]

정족산사고 고출형지안은 1665년(현종6)부터 1801년(순조1)까지의 기간에 총 53건이 확인된다.[94] 왕대별로 살펴보면, 현종 대 9건, 숙종 대 16건, 경종 대 1건, 영조 대 21건, 정조 대 5건, 순조 대 1건이 보인다. 영조 대에 가장 많은 고출이 진행이 된 후 급격히 횟수가 줄어들어 순조 대 이후에는 1건만 전해진다. 또 고출이 시행되었던 시기를 살펴보면, 1월 3건, 2월 8건, 3월(윤3월) 7건, 4월 6건, 5월(윤5월) 4건, 6월(윤6월) 3건, 7월 4건, 8월(윤8월) 2건, 9월 5건, 10월 4건, 11월 4건, 12월 2건이다. 특정한 시기나 계절에 집중되기보다는 실록을 고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출형지안의 작성형식을 살펴보면, 표지서명과 날짜를 적는 것을 시작으로 실록명, 궤수, 권수와 책수를 기록한다. 실록이 끝나면 일반서책과 의궤, 형지안에 대한 수량을 적고, 담당사관의 관직과 이름을 적고 있다. 이 형식은 포쇄형지안과 다르지 않다. 즉 고출형지안에는 어떤 목적으로 실록을 고출했는지를 따로 기록하지 않고, 제목에 '고출', '고출 후 포쇄' 등으로만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출형지안과 관련된 실록

91) 송기중 외, 앞의 책, 2007, p.132.
92) 서울대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족산사고 고출형지안은 53건, 오대산사고 고출형지안은 1건, 태백산사고 고출형지안은 4건으로 확인이 된다.
93) 『한원고사』 '曝曬式', "凡有實錄考出事則春秋館堂上翰林一員進去考出堂上有故則或翰林獨往(具黑團領四拜等節次與曝曬同)".
94) 본 고 [부록 표 4] 정족산사고의 고출형지안 참조.

기사 또는『승정원일기』기사와 대조하여 살펴보아야 고출의 목적, 고출의 범위에 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실록 기사와『승정원일기』기사를 통해서 실록을 고출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보인다. 하나는 전례(前例)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실록뿐만 아니라 의궤도 거의 대부분 유실되면서 선례(先例)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실록을 많이 이용하였다. 추숭(追崇)이나 존호(尊號), 관료의 논상(論賞) 등과 같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록을 고출하여 전례를 상고하였다. 예송논쟁이 있었던 시기에는 의례(儀禮)에 맞는 관대와 복색에 대한 내용도 선대(先代)의 사례를 찾기 위해 실록을 고출하였다. 두 번째의 경우에 대한 예로, 전대 왕의 행장(行狀)과 지문(誌文)을 인출하기 위해 실록을 고출하거나, 왕릉의 보수를 위해 왕릉 조성 당시의 자료를 수집할 때도 고출하였다.[95]

실록의 고출은 영조 대를 기점으로 횟수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를 의궤와 의례서의 제작과 편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궤는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으로 조선전기 의궤와 등록 등이 모두 소실됨에 따라 실록을 고출하는 일이 불가피하였다. 17세기 이후 제작된 의궤가 축적되고, 18세기 들어 다양한 국가의례를 기록한 의궤가 다수 제작되면서 실록을 고출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현존하는 의궤는 선조 대에 5종을 시작으로 영조 대까지 314종이 제작된다. 영조 대에 거의 대부분 국가 의례에 대한 전형이 갖추어지게 된다.[96] 또『국혼정례』,『상방정례』등의 의례서들이 제작되어 원본 실록의 열람 횟수가 줄어들면서 고출과정 상에서 생길 수 있는 기록 손상의 가능성도 감소하였다. 이런 사항은 결과적으로 원본 보존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한다.

---

95) 송기중 외, 앞의 책, 2005, p.134.
배현숙, 앞의 책, 2002, 7장 2절 '시대별 고출상황'과 3절 '실록고출의 추이'에서 각 시기별 실록 고출의 사유를 참조하여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이다.

96) 송기중 외, 앞의 책, 2007, pp.135-136.

## 제 2 절 고출의 양상

본 절에서는 고출형지안과 관련이 있는 실록 기사[97], 『승정원일기』 기사[98]를 통해 고출의 내용을 확인해보고, 목적을 분류해 봄으로써 실록의 고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3]은 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정족산사고의 실록을 고출한 기사 및 이와 관련된 고출형지안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고출 관련 기사

| 연번 | 서명 | 기사 시기 | 기사 내용 | 고출 목적 | 고출 시기 | 형지안 소장번호 |
|---|---|---|---|---|---|---|
| 1 | 현종 실록 | 1665년 (현종6) 7월1일 | 강학청 절목 제정을 위해 원자보양(元子輔養)절목을 실록에서 고출 → 7월29일 보고 | 자료 수집 | 1665년 7월 | 규9589 |
| 2 | 현종 실록 | 1666년 (현종7) 2월11일 2월19일 | 왕세자 책례(冊禮) 때 복색(服色) 확인 → 3월 7일 고출 내용 보고 | 전례 확인 | 1666년 2월29일 | 규9582 |
| 3 | 현종 실록 | 1666년 (현종7) 10월26일 | 후릉 석물에 대한 선왕의 유명(遺命) 확인 → 11월4일 유명이 없음을 보고함 | 자료 수집 | 1666년 11월6일 | 규9299 |
| 4 | 현종 실록 | 1669년 (현종10) 2월2일 | 정릉의 정자각을 창건하는 일로 실록 고출 → 3월2일 고출하러 감 | 전례 확인 | 1669년 3월13일 | 규9375 |
| 5 | 현종 실록 | 1669년 (현종10) 2월3일 | 세자의 관례와 입학례에 대한 논의 → 3월 14일 고출하고 돌아옴 | 전례 확인 | | |

97) 배현숙, 앞의 책, 2002, pp.367-377 <표 1> '실록고출의 추이(趨移)'를 참고하였다. 강화사고와 정족산사고의 고출 관련 실록 기사는 총 65건이다.

98) 강문식, 앞의 글, 2013, pp.192-194 <표 4>에서 정리하고 있는 '『승정원일기』 강화사고 고출 관련 기사'를 참고하였다. 강화사고 고출관련 기사는 총 33건이다.

| 연번 | 서명 | 기사 시기 | 기사 내용 | 고출 목적 | 고출 시기 | 형지안 소장번호 |
|---|---|---|---|---|---|---|
| 6 | 현종 실록 | 1669년 (현종10) 11월15일 | 종묘 각실의 시책(諡冊)을 베껴오도록 함 | 자료 수집 | 1669년 11월 | 규9596 |
| 7 | 현종 실록 | 1673년 (현종14) 4월5일 | 신해년의 일과 영릉을 천봉(遷奉)한 이유를 실록에서 고출 | 자료 수집 | 1673년 4월 | 규9451 |
| | 승정원 일기 | 1673년 (현종14) 4월6일 | 영릉의 천릉(遷陵) 이유와 신해년 목릉(穆陵)의 개봉에 관한 일 고출 → 4월20일 고출 내용 보고 | 자료 수집 | | |
| 8 | 승정원 일기 | 1674년 (숙종즉) 11월17일 | 중궁전 종복(從服)과 관련된 전례 고출 | 전례 확인 | 1674년 11월 | 규9398 |
| 9 | 숙종 실록 | 1681년 (숙종7) 5월18일 | 공정대왕의 묘호가 빠져있으니 실록을 상고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 | 자료 수집 | 1681년 6월 | 규9354 |
| 10 | 승정원 일기 | 1688년 (숙종14) 4월18일 | 국왕영정(影幀)을 모사하여 봉안하고 고묘(告廟)·진하(陳賀)하는 의절을 고출 | 전례 확인 | 1688년 4월 | 규9478 |
| 11 | 숙종 실록 | 1689년 (숙종15) 4월26일 | 예조에서 빈청(賓廳)에 내린 비지(批旨)의 거행이 어려워 실록 고출 요청(인현왕후 민씨의 폐위의 일) | 전례 확인 | 1689년 4월 | 규9618 |
| 12 | 숙종 실록 | 1690년 (숙종16) 4월26일 | 춘추관 실록에서 40여자가 칼로 베어 낸 것에 대해 외사고의 실록도 고출해볼 것 → 8월 6일에 무필은 없고, 베어낸 부분은 다른 사고의 실록과 같음을 보고 | 자료 수집 | 1690년 7월 | 규9355 |
| 13 | 숙종 실록 | 1698년 (숙족24) 9월30일 | 노산군의 복위와 중종 비인 신비(愼妃)의 추복에 대한 논의 고출 | 자료 수집 | 1698년 10월 | 규9344 |
| 14 | 숙종 실록 | 1713년 (숙종39) 1월20일 | 즉위 40년 기념 존숭(尊崇)의 전례 확인 | 전례 확인 | 1713년 2월4일 | 규9613 |

| 연번 | 서명 | 기사 시기 | 기사 내용 | 고출 목적 | 고출 시기 | 형지안 소장번호 |
|---|---|---|---|---|---|---|
| 15 | 영조 실록 | 1724년 (영조즉) 9월1일 | 왕위의 계승을 종묘, 사직과 영휘전에 고하는 축문에서의 칭호문제로 실록을 고출 | 전례 확인 | 1724년 9월 | 규9527 |
| 16 | 영조 실록 | 1727년 (영조3) 1월28일 | 인조의 비문을 고치는 일로 선조실록에서 고출, 1월 29일『승정원일기』에도 같은 내용 기사가 있음 | 자료 수집 | 1727년 2월 | 규9526 |
| 17 | 승정원 일기 | 1731년 (영조7) 4월13일 | 영릉 천릉(遷陵) 시의 의절(儀節)에 대해서 실록 고출 | 전례 확인 | 1731년 4월 | 규9611 |
| 18 | 영조 실록 | 1735년 (영조11) 3월16일 | 효장 세자빈 조씨를 책봉하여 현빈으로 삼는 것에 대해 고출했음 | 전례 확인 | 1735년 2월 | 규9612 |
| 19 | 영조 실록 | 1743년 (영조19) 3월27일 | 영조의 50세 기념 진연을 가을까지 기다려서 하고, 대사례는 중종의 일은 고출하도록 함 | 전례 확인 | 1743년 4월 | 규9235 |
| 20 | 영조 실록 | 1747년 (영조23) 12월17일 | 문종비에 대한 내용을 실록에서 고출 → 12월21일 고출 내용 보고: 현덕왕후가 빈궁으로 있다가 승하한 이후 책빈(冊嬪)한 기록이 없음 | 자료 수집 | 1747년 12월 | 규9229 |
| 21 | 영조 실록 | 1753년 (영조29) 2월5일 | 강릉왕후의 장월(葬月)이 실록과 보략의 기사가 일치하지 않아 비문에 모년하(某年夏)라고 쓰라고 함. 실록에서 고출하고 돌아와서 언급함. | 자료 수집 | 1753년 2월 | 규9533 |
| 22 | 영조 실록 | 1758년 (영조34) 2월5일 | 열성지장(列聖誌狀)의 내용을 실록에서 고출 | 자료 수집 | 1758년 2월 | 규9205 |
| 23 | 영조 실록 | 1762년 (영조38) 11월17일 | 영조의 칠순 행사의 일로 태조 때의 일을 실록에서 고출하여 보고함 | 전례 확인 | 1762년 11월 | 규9215 |

실록에서 처음 강화사고 고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1604년(선조37) 9월 “공신교서를 나눠주는 일에 대한 전례(功臣敎書 頒給 前例)”[99]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록고출을 했다는 기사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작성된 고출형지안은 전해지지 않는다.

전해지는 정족산사고 고출형지안 중에서 시기가 가장 앞선 것은 정족산사고가 설치된 이후 작성된 1665년(현종6) 7월 형지안[100]이다. 1665년 7월에 예조가 강학청(講學廳)이 행할 절목(節目)에 대해서 조사할 문적(文籍)이 없으니, 인종대왕이 원자로 계실 때와 인조 대 계해년 초의 원자보양(元子輔養) 절목을 춘추관으로 하여금 실록에서 고출하도록 요청하는 기사가 나온다.[101] 1665년 7월 고출형지안이 이 때의 기록으로 보인다. 같은 해 7월 29일 실록기사에서는 이조판서 김수항(金壽恒)이 실록을 이미 베껴왔다고 보고하니, 국왕이 고출한 부분이 소략하고 지금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예조판서와 보양관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절목을 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 국왕이 이를 따르는 내용이 나온다.[102]

1666년(현종7) 2월 11일과 19일에는 왕세자 책례(冊禮) 때의 복색(服色)의 일로 중종・인종 책례 때의 실록을 고출하자는 의견을 낸다.[103]

---

99) 『선조실록』 선조 37년 9월 7일 갑인조. “臣取考抄出實錄 則太宗朝佐命功臣錄勳時 有敎書 先爲摠論討逆錄勳之意 次列諸勳臣姓名 合爲一敎書 而因以此敎書 寫於各人分給之軸 故讀此一敎書 各人定功行賞之意 皆在其中”.

100) ‘표제명: 史閣上 康熙四年七月日 考出形止案’, 1665년 7월, [규9589].

101) 『현종실록』 현종 6년 7월 1일 을유조. “禮曹啓曰 講學廳應行節目 本曹可攷文籍 經亂蕩失. 當此新設之日 不可草草創定 仁宗大王爲元子時及 仁祖朝癸亥初元子輔養節目 請令春秋館 考出實錄後稟處.”.

102) 『현종실록』 현종 6년 7월 29일 계축조. “吏曹判書金壽恒曰 (중략)且實錄今已謄來 當有稟定之事. 上曰 實錄所謄甚疎略. 太宗朝則稱以元子府 官屬稱以侍學官 中宗朝則直以世子稱之 仁宗大王六歲加冠 出入書筵. 此是中宗朝創設 今不必遵行矣. (중략)太和請使禮判及輔養官相議 以定節目. 上從之.”.

103) 『현종실록』 현종 7년 2월 11일 임술조. “上曰 仁祖朝 予以元孫 行冊禮 以黑冠行禮 今則以何服色乎. 太和曰 當以章服行禮. 上曰 曾在中宗朝 仁宗行冊禮時 先着未加冠人所着之冠 冊禮之後 追行正冠禮云. 考見中宗朝實錄 則冊禮冠禮 先後可知矣.”, 현종 7년 2월 19일 경오조. “禮曹啓曰 今此王世子冊禮 依

같은 해 3월 7일 실록기사에서 예조가 “본조의 계사로 인해 인묘조에서 책례할 때의 관대와 복색을 실록에서 상고해 가지고 왔다”라는 내용[104]으로 보아, 1666년 2월 29일 고출형지안[105]이 이 내용에 대한 형지안으로 보인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후릉(厚陵) 석물(石物)에 대한 선왕의 유명(遺命)이 있었는지에 대해 실록을 고출하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106] 이후 같은 해 11월 4일에 사관 윤경교(尹敬敎)가 후릉의 석물에 대한 선대의 유명이 실록에는 없다고 보고한다.[107] 1666년 11월 6일에 작성된 고출형지안[108]이 이 건에 대한 형지안으로 생각된다.

1669년(현종10) 2월에는 실록고출에 대한 기사가 2건이 있다. 먼저 2월 2일에 중건청(重建廳)이 정릉(貞陵)의 정자각을 창건하는 일로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한 내용을 국왕에게 보고하자 태종조 및 명종·선조 양조의 실록을 상고하라는 내용이다.[109] 두 번째는 세자의 관례(冠禮)와 입학례(入學禮)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의 기사에서 나온다. 이제까지 조종조의 고사를 따랐는데, 문종조의 실록을 아직 상고하지 못하여 춘추관 당상으로 하여금 실록을 고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110] 이에 1669년 3월 2

---

仁廟朝時事 以先行冊禮啓定矣. 冊禮時冠帶服色 亦當依其時已行節目 而服色則不載於前後史官實錄謄來中. 且己丑年 自上世孫冊禮 行於冠禮之前 其時服色似當援據 而此與世子禮服色有間. 莫**重儀節 臣曹不敢擅便 請遣史官 考出 中廟、仁廟冊禮時實錄.**”.

104) 『현종실록』 현종 7년 3월 7일 정해조. “頃因本曹啓辭 仁廟朝冊禮時冠帶服色**考出實錄**以來”.

105) ‘표제명: 丙午二月二十九日江華史庫上 實錄考出後形止案’, 1666년 2월, [규9582].

106) 『현종실록』 현종 7년 10월 26일 계유조. “領相鄭太和曰 當時任事之臣 豈敢如是不謹乎. **意者有遺命而然歟.** 事在久遠 有難詳知 **若出於遺命** 則到今修改過爲侈大 亦似未安矣. **上曰 若有遺命 則必有載錄處 遣史官考出實錄**.”.

107) 『현종실록』 현종 7년 11월 4일 경진조. “以厚陵石物遺命考出事 遣史官尹敬敎于江華 實錄無現出處云.”.

108) ‘표제명: 江華上 康熙五年十一月初六日 實錄考出後形止案’, 1666년 11월 6일, [규9299].

109) 『현종실록』 현종 10년 2월 2일 을축조. “重建廳啓 以貞陵 丁字閣創建事 議于大臣 則領中樞李景奭以爲 難以臆見輕議 **考諸實錄**似當(중략)臣之愚見, 前後無異 宜急速考出太祖 太宗兩朝實錄 明知其時曲折後議定 俾無未盡之歎(중략)**上命考出太宗朝及明 宣兩朝實錄**”.

110) 『현종실록』 현종 10년 2월 3일 병인조. “浚吉曰 頃日召對時 臣陳達謁廟事

일에 박장원(朴長遠)과 이인환(李寅煥)을 강화부에 보내 실록에서 정릉에 관한 사적을 상고하게 하였다.[111] 이 두 가지의 일로 실록을 고출하고 작성한 형지안이 1669년 3월 13일 고출형지안[112]으로 보인다. 같은 해 3월 14일에 지춘추(知春秋) 박장원, 대교 이인환이 실록을 고출하고 돌아왔다는 기사[113]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1673년(현종14) 4월 5일에는 영릉을 봉심한 신하들을 인견하는데, 신해년의 일과 영릉을 천봉(遷奉)했던 이유를 강도(江都)에 보관한 실록에서 고출해 오도록 하고 있다.[114] 또 4월 6일 『승정원일기』에는 영릉의 천릉(遷陵)이유와 신해년 목릉(穆陵)의 개봉에 관한 일을 실록에서 고출하도록 청하는 춘추관의 계(啓)에 대한 기사가 있다.[115] 1673년 4월 고출형지안[116]이 이때의 형지안으로 생각된다. 이후 4월 20일에 『예종실록』과 『광해군일기』에서 고출한 내용을 보고하는 기사[117]가 『승정원일기』에서 확

---

及入學之禮 自上欲先行冠禮 故請行於歲首之月矣(중략)上曰 此等事 每倣祖宗朝故事(중략)卽今所未考者 文宗朝實錄也 積以貞陵事 有實錄考出之命 **文宗朝實錄考出** 事甚緊急 請令春秋館堂上 同往考出 上從之".

111) 『현종실록』 현종 10년 3월 2일 을미조. "遣知春秋朴長遠 待敎李寅煥于江華府 **考出貞陵事蹟於實錄**".

112) '표제명: 史閣上 康熙 八年三月十三日 實錄考出後形止案', 1669년 3월 13일, [규9375].

113) 『현종실록』 현종 10년 3월 14일 정미조. "知春秋朴長遠 待敎李寅煥 **考出實錄而還**".

114) 『현종실록』 현종 14년 4월 5일 갑진조. "上曰 辛亥年事 及英陵遷奉之由 令史官 **考江都實錄以來**".

115) 『승정원일기』 현종14년 4월 6일 을사조. "又以春秋館郎廳 以監事諸堂上意啓曰 **英陵遷陵之由 及辛亥年穆陵改封之事 考出實錄事** 命下矣 取考本館所藏實錄置簿 則只有宣祖朝以後實錄 而列聖實錄 與光海朝日記 皆不在其中 本館堂上一員及史官 卽爲下送江都史閣 使之考出以來 何如 傳曰 允".

116) '표제명: 史閣上 康熙十二年四月日 實錄考出時形止案', 1673년 4월, [규9451].

117) 『승정원일기』현종14년 4월 20일 기미조. "知春秋館事閔維重 待敎睦昌明書啓 臣等 本月初十日馳詣史閣 謹攷實錄 則睿宗朝戊子十一月二十九日 始下英陵改卜之命 新陵遷安 在於己丑三月初六日 但申叔舟議 有曰 初卜英陵 人多議之輿地 又有日官上言請改之語 而此等說話 皆不載於世宗朝以後實錄中 未知其由 穆陵修改之年 乃光海己酉 而辛亥年則無改封之擧矣 且靖陵·禧陵遷奉之事 雖無考出之命 旣現於攷事撮要 故考諸實錄 竝爲謄出以啓事 下禮曹".

인이 된다.

1713년(숙종39) 1월에는 영의정 이유(李濡)가 존숭(尊崇)하는 일을 상고하기 위해 강화도에 소장된 실록을 고출해 올 것을 건의한다.[118] 같은 해 2월 4일 고출형지안[119]이 이와 관련된 형지안으로 보인다. 이어서 2월 8일에 존숭도감(尊崇都監) 도제조(都提調) 이유(李濡) 등이 인경왕후・인현왕후의 위패를 고쳐 쓰는 일에 대해 의논하면서 "고사(故事)를 살펴보고 나서"라고 말하는 내용[120]으로 이미 실록고출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731년(영조7) 4월 13일에는 영릉(英陵) 천릉(遷陵)시의 의절(儀節)에 관한 내용을 강화사고 실록에서 고출하도록 하는 기사[121]가 나오는데, 1731년 4월 고출형지안[122]이 이 시기의 형지안으로 여겨진다. 또 1758년(영조34) 2월 5일의 기록에 홍계희(洪啓禧)로 하여금 강도(江都)의 사고에서 열성지장(列聖誌狀)의 내용을 선조(先朝)의 실록에서 고출해 오도록 하는 내용이 나온다.[123] 이 내용과 관련된 실록형지안은 1758년 2월 고출

---

118) 『숙종실록』 숙종 39년 1월 20일 무술조. "**領議政李濡曰 尊崇凡事 當考前例** 而世祖朝謄錄無存者 宣廟朝謄錄 亦多殘缺. **請遣史官 考出江都所藏兩朝實錄以來**.".

119) '표제명: 鼎足山上 康熙五十二年癸巳二月初四日 實錄考出形止案', 1713년 2월 4일, [규9613].

120) 『숙종실록』 숙종 39년 2월 8일 병진조. "濡又曰 **永昭敬寧兩殿改題主一款考見故事** 則太祖進上徽號時 以刮磨未安 不得改題矣. 上曰 定宗 定安王后位則改題矣. 濡曰 宣廟甲辰年尊號時 王妃位 亦改題矣. 宇杭以改題爲難 請勿爲改題 上曰 **既有甲辰改題之例** 今亦改題可也. 宇杭仍請兩殿進冊寶時 王世子親行, 上從之.".

121) 『승정원일기』 영조 7년 4월 13일 을사조. "游曰 **英陵遷窆時儀軌 有考出之敎** 而詳考謄錄 則不得仔細 **當考出實錄後 可以知之矣** 上曰 京無實錄乎 當往江華矣 游曰 此意不出擧條 以榻前下敎 分付 何如 上曰 **世宗大王遷陵時儀節 趁明日 發遣春秋館堂上郎廳於江華史閣 實錄詳細考出以來 可也**".

122) '표제명: 雍正九年辛亥四月日 鼎足山史閣藏 考出時形止案', 1731년 4월, [규9611].

123) 『영조실록』 영조 34년 3월 5일 신유조. "命遞知春秋李成中 以洪啓禧代之 **使往江都考來先朝實錄** 史臣曰 啓禧以爲列聖誌狀校正時 多有攷之事 請往閱江都所藏實錄 而知春秋李成中方帶藥院提擧 不可遠出 故代以啓禧而遣之(후략)".

형지안[124]이다. 같은 해 3월 23일에 국왕이 숭문당(崇文堂)에 나가 홍계희를 인견한 기사에서는 강화사고에서 열성(列聖)의 실록을 고출해 왔다는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다.[125]

## 제 3 절 고출과 사고(史庫)의 관리

앞서 영조 대의 사고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각 관리를 더 철저히 하였기 때문에 사각수개의 횟수가 늘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언급하였다. 고출이 숙종 대와 영조 대에 많이 시행된 이유는 전례(典禮) 정비를 위한 선례의 확인과 자료 수집을 위해서이다. 또 숙종 대부터 영조 대까지 횟수가 많은 형지안은 포쇄와 사각수개형지안이다. 포쇄는 정기적인 점검이니 주기가 잘 지켜진다면 재위기간만큼 횟수가 많은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반면에 사각수개는 비정기적인 관리로 갑자기 횟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영조 대에 고출과 사각수개 두 가지 경우가 횟수가 증가한 점에 주목하여, 실록의 고출을 시행되는 것이 기록관리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정족산사고의 경우는 고출과 포쇄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3건만 확인된다. 1706년 5월 실록형지안[126], 1741년 10월 실록형지안[127], 1795년 6월 실록형지안[128]이 그 3건의 형지안이다. 1706년(숙종32) 5월 실록형지안은 『단종실록부록』을 봉안하면서 포쇄와 고출을 같이 진행한 형지안이고, 1741년(영조17) 10월 형지안은 실록각 수개(修改)를 하면서 포쇄와

---

124) '표제명: 乾隆二十三年戊寅二月日 考出形止案', 1758년 2월, [규9205].

125) 『영조실록』 영조 34년 3월 23일 기유조. "上御崇文堂 引見洪啓禧 時啓禧往 **江華史庫 考出列聖實錄**而來矣 上曰 孝寧 讓寧二大君心中 無物欲矣(후략)".

126) '표제명: 康熙四十五年丙戌五月日 鼎足山上 端宗大王實錄附錄奉安實錄考出曝曬時形止案', 1706년 5월, [규9616].

127) '표제명: 乾隆六年辛酉十月日 鼎足山城史庫上 實錄閣修改及考出曝曬形止案', 1741년 10월, [규9357].

128) '표제명: 乙卯六月日 江華府上鼎足山城 考出及曝曬形止案', 1795년 6월, [규9370].

고출을 진행하고 작성한 형지안이다. 1795년(정조19) 6월 실록형지안은 고출과 포쇄를 함께 진행하고 기록한 형지안이다. 고출형지안의 작성 형식이나 내용이 포쇄형지안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록 고출을 하면서 사고의 장서점검도 진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록의 고출을 시행하는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장서점검만 하거나 포쇄를 같이 진행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록고출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록포쇄를 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또 실록고출의 경우 시급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까운 정족산사고를 거의 이용할 정도였는데, 포쇄 작업까지 할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고출과 포쇄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지방 외사고의 경우는 한번 가기 위해서 시간과 물자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보통은 봉안이나 포쇄를 위해서 사고에 가면, 다른 관리 작업도 같이 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외관 건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고 수직(守直)을 담당하는 관원이 강화유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영조 대에는 고출이 이전 시기보다 빈번하게 진행이 되고, 포쇄는 주기에 맞춰서 시행이 되니 사관은 물론 관리자들이 사고를 가게 되는 일이 다른 왕대에 비해 잦아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고의 장서점검이 꾸준히 진행되고, 사각에 대한 상태점검도 자주하게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족산사고에서 고출횟수가 늘어난 것이 사각수개의 횟수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고출은 실록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열람으로 인한 실록의 손상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오히려 보존환경이 개선되는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759년(영조35) 윤6월 7일에 중종의 잠저(潛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강화사고에서 『성종실록』을 고출한다는 기사[129]가 나온다. 이때 작성된

129)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윤6월 7일. “上命書傳敎曰 **中廟潛邸 尙未知某處** 心常抑菀 勿論眞的與否 旣聞之後 尤宜廣考大君時就潛邸也. 必有下敎 令春秋館堂郞 **卽往沁都史閣 成廟朝實錄 詳細考來**. 上曰 右副承旨持此傳敎 先爲出去 分付. 使之今日辭朝 上番當下去 其代兼春秋入侍 可也.(후략)”.

형지안이 1759년 윤6월 고출형지안[130]이다. 주목할 점은 실록을 고출하기 위해 강화도에 다녀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있다. 같은 해 윤6월 13일에 김보순(金普淳)이 강화도(沁都)로 고출을 다녀와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이번에 큰 비로 사각에 비가 새서 궤 안의 책이 젖은 것이 많다. 그래서 책은 포쇄를 해서 말리고, 비가 새는 곳은 고치고 왔다"는 기사[131]가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고출을 시행한 후에는 장서 상태 점검은 물론 사각의 상태 점검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김보순의 경우처럼 사각을 보수하는 일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앞서 살펴본 사각수개의 경우들은 간단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정기적인 포쇄만 진행이 되었다면, 포쇄하는 때에만 장서와 사각의 상태 점검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사각 외부의 상태는 수직(守直)관리가 점검하고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각의 내부는 파견된 사관이 아니면 열 수 없으므로 내부 상태에 대한 점검은 포쇄를 할 때만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고출이 시행되면서 장서 점검은 물론, 실록을 보관하는 환경의 상태 점검까지 자주하게 된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포쇄만 했을 때보다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신속하게 수리작업을 하게 된다는 점이 사각수개를 자주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130) '표제명: 乾隆二十四年 閏六月日 鼎足山城上 實錄考出時形止案', 1759년 윤6월, [규9479].

131)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윤6월 13일. "普淳曰 **今番大雨 史閣大段滲漏 至於各樣櫃子中所藏冊子 多有霑濕者**. **臣旣下往 故曝曬其冊子 修改其滲漏處而來**. 以此推之 則各道史閣 必多有滲漏處 而姑無狀聞之事 以此意申飭 以爲這這馳報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上命允鈺書之曰 靖國功臣原從人中有錄券者 令該府訪問以啓. 諸臣以次退出.".

# 맺음말

이상 조선시대 정족산사고의 실록형지안에 나타난 실록의 봉안부터 포쇄, 수보, 사각수개를 비롯하여 고출 등 실록의 관리 및 보존의 세부내용을 살펴보았다. 실록형지안은 사고 건물과 사고에 소장된 실록을 관리하면서 생성되는 장서점검대장이다. 예부터 중요 기록을 관리와 보존하는 방법과 제도의 전통이 오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록형지안에 전하는 기록을 통해, 실록의 보존관리 체계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오늘날의 고문서·전적 등 기록 관리 체계에 응용·활용될 수 있는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록형지안을 실록의 봉과와 봉안, 실록의 포쇄, 실록의 수보와 사각수개 등의 관리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진행과정과 실록형지안에 나타나 있는 사항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실록의 관리는 봉안식 직전 단계인 봉과식부터 시작된다. 봉과식은 편찬이 완료된 실록을 궤에 넣는 의식으로, 천궁가루와 창포가루가 들어간 주머니를 궤에 넣음으로써 벌레와 습기 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식흔(蝕痕)과 부식 등의 손상을 예방한다. 오늘날 서고 관리실태와 비교해보면 서고에 기록물이 입고되기 전에 훈증하거나 소독하는 과정이다. 봉과의 과정은 실록궤를 열고 다시 닫을 때 반복되는 과정으로 실록의 보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봉안형지안은 사고에 봉안이 완료되고 나서 작성이 되어 사고에 어떤 서적류가 입고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관리 작업 시 봉안형지안의 작성은 기존 내역의 뒤에 이어 기재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실록의 포쇄는 그늘진 곳에서 바람에 책을 말리는 것으로 습기와 벌레를 제거하는 책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이다. 포쇄를 하면서 책의 상태점검도 진행하고, 사각 건물과 실록궤에 대

한 상태점검도 시행되었다. 포쇄가 마무리되면 실록은 다시 붉은 명주 보자기로 싸서 천궁, 창포 가루 주머니와 함께 궤에 넣는다. 포쇄를 진행하면서 궤에 같이 들어가는 물품들을 교체주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 주었다. 포쇄형지안의 주기를 검토해보면 습기에 의한 손상은 있어도 해충에 의한 피해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실록의 수보는 전주사고본 실록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병자호란과 그 이후 관리 소홀로 인해 훼손이 심한 전주사고본 실록 밀랍본의 복원과 보존처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사각수개에 관련된 형지안을 살펴보았다. 포쇄나 실록의 수보 등이 실록 자체의 보존에 중점을 두었다면, 사각수개는 보존환경관리로 생각할 수 있다. 포쇄를 시행하고, 약품주머니를 교체해 주어도 사각건물의 관리가 소홀하다면 실록궤와 최종적으로는 실록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각수개 작업은 중요한 관리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실록의 고출은 선행연구에서는 실록의 활용으로 분류를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록의 관리 측면에서 고출을 살펴보았을 때 잦은 열람은 오히려 실록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다. 영조 대 이후 고출 횟수가 감소한 것은 좋은 현상으로 열람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낮추게 되었다. 그리고 실록 고출을 시행하면서 실록 및 사고 건물에 대한 비정기적인 상태 점검이 자주 나타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각수개나 포쇄 등의 사고 관리가 더 충실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실록형지안은 역사학·서지학·문화재학 등의 분야에서는 실록을 연구하는 자료로서 익히 알려진 기록이다. 하지만 기록을 관리와 보존하는 기록학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다. 본 연구는 현전하는 전체 실록형지안 중 정족산사고본으로 한정하여 진행한 데에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실록형지안이 사료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기록학의 중요 연구 대상으로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실록의 전통적인 보존 관리 방법을 통해 향후 중요 기록 또는 서적의 관리 제도를 전승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실록청의궤(實錄廳儀軌)』
『실록형지안(實錄形止案)』
『적성지(赤城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탁지정례(度支定例)』
『한원고사(翰苑故事)』

##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史庫地調査報告書』, 시사문화사, 1986.
배현숙, 『朝鮮實錄硏究序說』, 태일사, 2002.
서울대학교도서관,『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上), 신흥인쇄주식회사 , 1981.
송기중, 신병주, 박지선, 이인성,『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1)』,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신병주,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책과 함께, 2007.

## 학회지 및 학위논문

강문식,「조선후기 五臺山史庫의 운영」, 『장서각』 제27집, 2012.
_____,「조선후기 江華史庫의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제64집, 2013.
김정미,「조선시대 사고형지안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4.
김혜자, 김세원, 신창식, 「창포(Acorus calamus L. var. angustatus Bess.)잎과 뿌리 중의 성분 분석」, 『한국식품과학회지』 32권 1

호, 2000.
신병주, 「‘實錄形止案’을 통해 본 『조선왕조실록』의 관리체계」, 『국사관논총』 제102집, 2003.
_____, 「‘오대산본’『조선왕조실록』의 간행과 보관」, 『역사와 현실』 제61집, 2006.
안미경,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일반서책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55집, 2013.
이상찬, 「전주사고본 실록의 보존과 관리」, 『규장각』 제39집, 2011.
_____, 「오대산 사고본 실록의 자료적 가치」, 『한국학연구』 제31집, 2013.
_____, 「정족산 사고본 태조~명종 실록의 구성과 서지적 특징」, 『한국문화』 제63집, 2013.
이승호, 정진관, 박상현, 김문식, 한연수, 서정미, 김인선, 「석창포 추출물의 모기에 대한 기피활성」, 『한국환경농학회지』 30권 1호, 2011.

## 원문과 국역 이용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018.12.16. 인출)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do (2018.12.14. 인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2019.01.16. 인출)
http://kyudb.snu.ac.kr/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2018.12.16. 인출)

## Abstract

#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Sillok* in Jeongjok Mountain History Archives' *Sillokhyeongjian*



Eunjin Jun

Dept. of Archiv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illokhyeongjian*(實錄形止案) is a kind of an inspection book written after checking through the history archives(史庫). This study focused on the remaining Jeongjok Mountain history archives' *Sillokhyeongjian* kept b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It was classified by the management types, which are *bonggwa*(封裹), *bongan*(奉安, enshrinement), airing(曝曬), conservation treatment(修補) and repair of the history archives. And also reviewed the procedure of each management types and comments written in the *Sillokhyeongji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management system of *Sillok* during the mid-late Joseon Dynasty period by analyzing the contents in terms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archive.

*Sillok* management starts from *bonggwa*, which is a step wrapping the *Sillok* with a red silk cloth and putting it into a chest with insect repellent herb(cnidium and iris) powder pouches. This step is the most basic process in *Sillok* preservation because it is repeated everytime when the *Sillok* chest is opened and closed.

Airing is one of the basic methods in *Sillok* management and preservation. By putting the books in a windy shade place, this removes moisture and insects inside the books. At the same time, *Sillok*'s condition and history archives building were also inspected. When reviewing the comments written on the *Sillokhyeongjian,* there were damages made by moisture but no comments about damage caused by insects.

Referring to *Sillok*(考出) was carried out to check the historical precedents or to collect data when there were important events or matters in the country. While going to the history archives for *Sillok* reference, irregular condition check on *Sillok* and the archives building were done more frequently than before. This led to resulting in more faithful management for the history archives and books kept inside including the *Sillok*.

Through this study, it is thought that *Sillokhyeongjian* could be new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research subject in the field of Archival Studi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raditional preservation management methods will allow the management of important records or books to be passed down and developed in the future.

**keywords : Jeongjok Mountain History Archives, archive management, conservation treatment(修補), airing(曝曬), *Sillokhyeongjian*(實錄形止案), referring to *Sillok*(考出)**

***Student Number*** : 2017-23322

# 부 록

[부록 표 1] 강화사고 및 정족산사고의 봉안형지안(21건)

| 연번 | 실록명 | 실록 제작시기 | 봉안시기 | 형지안 소장번호 | 비고 |
|---|---|---|---|---|---|
| 1 | 재간행본실록 | 1606년 4월 | 1606년 6월 | 규9467 | 전주사고본 원본실록 |
| 2 | 선조실록 | 1616년 12월 | 1618년 7월 | 규9193 | - |
| 3 | 광해군일기 | 1633년 12월 | 1634년 6월 | 규9191 | - |
| 4 | 인조실록 | 1653년 6월 | 1653년 7월<br>1654년 10월 | 규9684<br>규9545 | -<br>실록봉안후형지안 |
| 5 | 선조수정실록 | 1657년 9월 | 1657년 9월<br>1657년 10월 | 규9685<br>규9714 | - |
| 6 | 실록이안(移安) | - | 1660년 12월 | 규9592 | 정족산사고 설치 |
| 7 | 효종실록 | 1661년 2월 | 1661년 3월 | 규9559 | - |
| 8 | 등출(謄出)실록 | 1665년 12월 | 1666년 1월 | 규9689 | 등서본 봉안 |
| 9 | 현종실록 | 1677년 9월 | 1677년 9월<br>1678년 9월 | 규9629<br>규9358 | - |
| 10 | 현종개수실록 | 1683년 3월 | 1683년 5월 | 규9439 | - |
| 11 | 단종실록부록 | - | 1706년 5월 | 규9616 | - |
| 12 | 실록환안(還安) | - | 1707년 11월 | 규9356 | 사각이달(史閣移達),<br>실록환안 |
| 13 | 숙종실록 | 1728년 3월 | 1728년 5월 | 규9722 | - |
| 14 | 경종실록 | 1732년 2월 | 1733년 10월 | 규9600 | - |
| 15 | 경종수정실록 | 1781년 7월 | 1781년 8월 | 규9529 | 영조실록도 봉안 |
| 16 | 영조실록 | 1781년 7월 | 1781년 7월 | 규9674 | - |
| 17 | 정조실록 | 1805년 8월 | 1805년 8월 | 규9228 | - |
| 18 | 실록이안(移安) | - | 1813년 3월 | 규9188 | 2차 사고개건시 이안 |
| 19 | 순조실록 | 1838년 윤4월 | 1839년 9월 | 규9211 | - |
| 20 | 헌종실록 | 1831년 10월 | 1852년 9월 | 규9652 | - |
| 21 | 철종실록 | 1865년 윤5월 | 1871년 9월 | 규9244 | - |

[부록 표 2] 강화사고 및 정족산사고의 포쇄형지안(59건)

| 연번 | 시기 | 표제명 | 형지안 소장번호 | 비고 |
|---|---|---|---|---|
| 1 | 1603년 10월(선조36) | 萬曆三十一年癸卯十月十八日 史庫曝曬形止案 | 규9485 | 강화사고 |
| 2 | 1611년 5월(광해군3) | 萬曆三十九年辛亥五月初二日 實錄曝曬形止案 | 규9664 | 강화사고 |
| 3 | 1617년 2월(광해군9) | 萬曆四十五年丁巳二月十五日 實錄曝曬形止案 | 규9661 | 강화사고 |
| 4 | 1629년 4월(인조7) | 崇禎二年己巳四月十五日 實錄曝曬形止案 | 규9443 | 강화사고 |
| 5 | 1633년 7월(인조11) | 崇禎六年癸酉七月二十六日 實錄曝曬形止案 | 규9598 | 강화사고 |
| 6 | 1661년 11월(현종2) | 史閣上 順治十八年十一月初二日 孝宗朝實錄奉安後曝曬時形止案 | 규9506 | - |
| 7 | 1663년 9월(현종4) | 康熙二年九月十二日 史閣上 實錄曝曬形止案 | 규9564 | - |
| 8 | 1664년 9월(현종5) | 史閣上 康熙三年九月初四日 實錄曝曬及改張時形止案 | 규9544 | 포쇄 겸 개장 |
| 9 | 1664년 11월(현종5) | 姜曦三年十一月初九日 實錄 改櫝入盛形止案 | 규9550 | 포쇄 겸 개궤 |
| 10 | 1677년 8월(숙종3) | 史閣上 康熙十六年八月日 實錄曝曬時形止案 | 규9601 | - |
| 11 | 1687년 8월(숙종13) | 江華上 康熙二十六年八月日 實錄閣修改後曝曬時形止案 | 규9353 | - |
| 12 | 1691년 10월(숙종17) | 康熙三十年十月日 肅宗辛未 鼎足山 實錄曝曬形止案 | 규9607 | - |
| 13 | 1698년 9월(숙종24) | 史庫上 康熙三十七年九月日 實錄曝曬時形止案 | 규9283 | - |
| 14 | 1701년 10월(숙종27) | 江華府史庫上 康熙四十年辛巳十月 實錄閣修改及曝曬時形止案 | 규9462 | 포쇄 겸 실록각 수개 |
| 15 | 1704년 7월(숙종30) | 康熙四十三年甲申七月日 江華史庫上 實錄閣修改及曝曬時形止案 | 규9201 | 포쇄 겸 실록각 수개 |
| 16 | 1706년 5월(숙종32) | 康熙四十五年丙戌五月日鼎足山上端宗大王實錄附錄奉安 實錄考出曝曬形止案 | 규9616 | 포쇄, 봉안 겸 고출 |

| 연번 | 시기 | 표제명 | 형지안 소장번호 | 비고 |
|---|---|---|---|---|
| 17 | 1709년 10월(숙종35) | 己丑十月初四日 鼎足山上 實錄曝曬形止案 | 규9359 | - |
| 18 | 1712년 3월(숙종38) | 鼎足山上 康熙五十一年壬辰三月十五日 實錄曝曬形止案 | 규9619 | - |
| 19 | 1717년 10월(숙종43) | 康熙五十六年丁酉十月日 鼎足山城上 實錄曝曬形止案 | 규9614 | - |
| 20 | 1721년 9월(경종1) | 康熙六十年辛丑九月日 鼎足山 史閣藏 實錄曝曬形止案 | 규9493 | - |
| 21 | 1724년 6월(경종4) | 雍正二年甲辰六月日 鼎足山 史閣藏 實錄曝曬形止案 | 규9615 | - |
| 22 | 1728년 5월(영조4) | 雍正六年五月日 史閣藏 曝曬時形止案 | 규9421 | - |
| 23 | 1736년 8월(영조12) | 乾隆元年八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史閣修改形止案 | 규9525 | 포쇄 겸 사각 수개 |
| 24 | 1741년 10월(영조17) | 乾隆六年辛酉十月日 鼎足山城 史庫上 實錄閣修改及考出曝曬形止案 | 규9357 | 포쇄, 고출 겸 실록각 수개 |
| 25 | 1742년 8월(영조18) | 乾隆七年壬戌八月三十日 鼎足山城 史庫上 實錄閣曝曬時形止案 | 규9307 | - |
| 26 | 1745년 9월(영조21) | 乾隆十年乙丑九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及實錄閣修改時形止案 | 규9474 | 포쇄 겸 실록각 수개 |
| 27 | 1747년 9월(영조23) | 乾隆十二年丁卯九月日鼎足山城 史庫上光廟御製御筆奉安及實錄曝曬時形止案 | 규9659 | - |
| 28 | 1749년 9월(영조25) | 乾隆十四年己巳九月日 鼎足山城 史庫上 皇壇儀奉安及實錄曝曬時形止案 | 규9463 | - |
| 29 | 1754년 10월(영조30) | 乾隆十九年甲戌十月日 鼎足山城 史庫上實錄曝曬及御製國婚定例奉安時形止案 | 규9626 | - |
| 30 | 1760년 9월(영조36) | 乾隆二十五年庚辰九月日 史閣上 御製奉安及實錄曝曬形止案 | 규9481 | - |
| 31 | 1762년 8월(영조38) | 乾隆二十七年壬午八月日 鼎足山城 史庫上 實錄曝曬及史庫修改時形止案 | 규9482 | 포쇄 겸 사고 수개 |

| 연번 | 시기 | 표제명 | 형지안 소장번호 | 비고 |
|---|---|---|---|---|
| 32 | 1764년 8월(영조40) | 乾隆二十九年甲申八月日 鼎足山城 史庫上 實錄閣修改及曝曬形止案 | 규9179 | 포쇄 겸 실록각 수개 |
| 33 | 1766년 9월(영조42) | 乾隆三十一年丙戌九月日 鼎足山城 史庫上 實錄曝曬及御製奉安時形止案 | 규9535 | - |
| 34 | 1769년 8월(영조45) | 乾隆三十四年己丑八月日鼎足山城 史庫上 實錄曝曬與修改及御製奉安時形止案 | 규9534 | - |
| 35 | 1771년 4월(영조47) | 乾隆三十六年辛卯四月日 鼎足山城 史庫上 實錄曝曬及御製奉安時形止案 | 규9536 | - |
| 36 | 1774년 4월(영조50) | 乾隆三十九年甲午四月日 鼎足山城上 實錄曝曬及御製奉安時形止案 | 규9531 | - |
| 37 | 1777년 8월(정조1) | 乾隆四十二年丁酉八月 鼎足山城 實錄曝曬及御製奉安史閣修改時形止案 | 규9532 | - |
| 38 | 1795년 6월(정조19) | 乙卯六月日 江華府上 鼎足山城考出及曝曬形止案 | 규9370 | 포쇄 겸 고출 |
| 39 | 1810년 9월(순조10) | 嘉慶十年九月日純祖庚午 鼎足山城 御製奉安及實錄曝曬形止案 | 규9429 | - |
| 40 | 1819년 윤4월(순조19) | 嘉慶二十四年己卯閏四月日鼎足山城 史閣上 列聖祖實錄曝曬形止案 | 규9371 | - |
| 41 | 1825년 3월(순조25) | 道光五年乙酉三月日 鼎足山城史閣上 列聖祖實錄曝曬形止案 | 규9539 | - |
| 42 | 1829년 9월(순조29) | 道光九年己丑九月日 鼎足山城史閣藏 列聖祖實錄曝曬形止案 | 규9372 | - |
| 43 | 1832년 4월(순조32) | 道光十二年壬辰四月二十八日 鼎足山城 史閣上 列聖祖實錄曝曬形止案 | 규9374 | - |
| 44 | 1836년 8월(헌종2) | 道光十六年丙申八月日 鼎足山城 憲廟實錄曝曬形止案 | 규9653 | - |
| 45 | 1843년 8월(헌종9) | 道光二十三年癸卯八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654 | - |

| 연번 | 시기 | 표제명 | 형지안 소장번호 | 비고 |
|---|---|---|---|---|
| 46 | 1846년 8월(헌종12) | 道光二十六年丙午八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後形止案 | 규9655 | - |
| 47 | 1850년 9월(철종1) | 道光三十年九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238 | - |
| 48 | 1856년 3월(철종7) | 咸豐六年三月日哲宗丙辰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212 | - |
| 49 | 1860년 윤3월(철종11) | 咸豐十年閏三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219 | - |
| 50 | 1864년 9월(고종1) | 同治三年九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255 | - |
| 51 | 1871년 9월(고종8) | 同治十年九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244 | - |
| 52 | 1880년 4월(고종17) | 光緖六年四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247 | - |
| 53 | 1888년 4월(고종 25) | 光緖十四年四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239 | - |
| 54 | 1893년 3월(고종30) | 光緖十九年三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204 | - |
| 55 | 1898년 6워(고종35) | 道光二年六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297 | - |
| 56 | 1900년 6월(고종37) | 光武四年六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293 | - |
| 57 | 1900년 6월(고종37) | 光武四年六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294 | - |
| 58 | 1903년 4월(고종40) | 光武七年四月日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292 | - |
| 59 | 1906년 3월(고종43) | 光武十年三月日(丙午式) 鼎足山城 實錄曝曬形止案 | 규9296 | - |

[부록 표 3] 정족산사고의 사고수개형지안(18건)

| 연번 | 시기 | 목적 | 형지안 소장번호 | 상세내용 |
|---|---|---|---|---|
| 1 | 1701년 10월(숙종27) | 실록각수개, 포쇄 | 규9462 | 연목절상(椽木折傷) |
| 2 | 1703년 6월(숙종29) | 실록각수개 | 규9194 | 빗물(雨漏) |
| 3 | 1704년 7월(숙종30) | 실록각수개, 포쇄 | 규9201 | - |
| 4 | 1713년 6월(숙종39) | 사각우누처(雨漏處) 수개 | 규9657 | 빗물(雨漏) |
| 5 | 1724년 6월(경종4) | 포쇄 | 규9615 | 빗물(雨漏) |
| 6 | 1734년 4월(영조10) | 사각수개 | 규9528 | 파손(破損) |
| 7 | 1736년 8월(영조12) | 포쇄와 사각수개 | 규9525 | 누수(滲水) |
| 8 | 1741년 10월(영조17) | 실록각수개, 고출, 포쇄 | 규9357 | 빗물(雨漏) |
| 9 | 1745년 9월(영조21) | 포쇄, 실록각수개 | 규9474 | 빗물(雨漏) |
| 10 | 1756년 10월(영조32) | 사고수개, 포쇄, 어제책봉안 | 규9625 | 빗물(雨漏) |
| 11 | 1757년 8월(영조33) | 사고수개 | 규9369 | 궤(櫃)의 파손 |
| 12 | 1762년 8월(영조38) | 포쇄, 사고수개 | 규9482 | 부재(廳板) 손상 |
| 13 | 1763년 7월(영조39) | 실록각수개 | 규9214 | 누수(滲水) |
| 14 | 1764년 8월(영조40) | 실록각수개, 포쇄 | 규9179 | 박공판(朴工板), 서까래(椽木) 손상 |
| 15 | 1765년 9월(영조41) | 실록각고출 | 규9361 | 빗물(雨漏) |
| 16 | 1769년 8월(영조45) | 포쇄, 수개, 어제봉안 | 규9534 | 빗물(雨漏), 서까래 부후(椽木腐) |
| 17 | 1777년 8월(정조1) | 포쇄, 어제봉안, 사각수개 | 규9532 | 빗물(雨漏) |
| 18 | 1777년 10월(정조1) | 사각수개 | 규9572 | 부재(廳板) 손상 |

[부록 표 4] 정족산사고의 고출형지안(53건)

| 연번 | 시기 | 표제명 | 형지안 소장번호 |
|---|---|---|---|
| 1 | 1665년 7월(현종6) | 史閣上 康熙四年七月日 考出形止案 | 규9589 |
| 2 | 1665년 9월(현종6) | 史閣上 康熙四年九月日 落卷考出時形止案 | 규9552 |
| 3 | 1666년 2월(현종7) | 丙午二月二十九日 江華史庫上 實錄考出形止案 | 규9582 |
| 4 | 1666년 11월(현종7) | 江華上 康熙五年十一月初六日 實錄考出後形止案 | 규9299 |
| 5 | 1669년 3월(현종10) | 史閣上 康熙八年三月十三日 實錄考出後形止案 | 규9375 |
| 6 | 1669년 11월(현종10) | 史閣上 康熙八年十一月日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596 |
| 7 | 1673년 4월(현종14) | 史閣上 康熙十二年四月日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451 |
| 8 | 1674년 3월(현종15) | 史閣上 康熙十三年三月日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351 |
| 9 | 1674년 11월(현종15) | 史閣上 康熙十三年十一月日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398 |
| 10 | 1680년 윤8월(숙종6) | 史閣上 康熙十九年閏八月日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548 |
| 11 | 1681년 6월(숙종7) | 史庫上 康熙二十年六月日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354 |
| 12 | 1688년 4월(숙종14) | 史閣上 康熙二十七年四月日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478 |
| 13 | 1689년 윤3월(숙종15) | 史閣上 康熙二十八年閏三月日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225 |
| 14 | 1689년 4월(숙종15) | 史庫上 康熙二十八年四月日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618 |
| 15 | 1690년 7월(숙종16) | 史庫上 康熙二十九年七月日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355 |
| 16 | 1694년 3월(숙종20) | 康熙三十三年三月日 肅宗甲辰鼎足山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360 |
| 17 | 1698년 10월(숙종24) | 史庫上 康熙三十七年十月日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344 |
| 18 | 1702년 5월(숙종28) | 江華史庫上 康熙四十一年壬午五月日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197 |
| 19 | 1704년 8월(숙종30) | 康熙四十三年甲申八月日 鼎足山上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236 |
| 20 | 1705년 2월(숙종31) | 康熙四十四年乙酉二月日鼎足山上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216 |
| 21 | 1706년 5월(숙종32) | 康熙四十五年丙戌五月日 鼎足山上 端宗大王實錄附錄奉安 實錄考出曝曬時形止案 | 규9616 |
| 22 | 1713년 2월(숙종39) | 鼎足山上 康熙五十二年癸巳二月初四日 實錄考出形止案 | 규9613 |
| 23 | 1717년 7월(숙종43) | 鼎足山上 康熙五十六年丁酉七月二十二日 實錄考出形止案 | 규9200 |
| 24 | 1718년 2월(숙종44) | 康熙五十七年戊戌二月日 史閣藏鼎足山 考出時形止案 | 규9453 |
| 25 | 1719년 1월(숙종45) | 康熙五十八年己亥正月日 鼎足山史閣藏 考出時形止案 | 규9392 |
| 26 | 1724년 9월(경종4) | 雍正二年甲辰九月日 鼎足山史閣藏 考出時形止案 | 규9527 |
| 27 | 1727년 2월(영조3) | 雍正五年丁未二月日 鼎足山史閣藏 考出時形止案 | 규9526 |
| 28 | 1731년 4월(영조7) | 雍正九年辛亥四月日 鼎足山史閣藏 考出時形止案 | 규9611 |
| 29 | 1735년 2월(영조11) | 雍正十三年二月日 江華上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612 |

| 연번 | 시기 | 표제명 | 형지안 소장번호 |
|---|---|---|---|
| 30 | 1739년 3월(영조15) | 乾隆四年己未三月十九日 鼎足山城史閣藏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627 |
| 31 | 1741년 10월(영조17) | 乾隆六年辛酉十月日 鼎足山城史庫上 實錄閣修改及考出曝曬形止案 | 규9357 |
| 32 | 1743년 4월(영조19) | 乾隆八年四月日 鼎足山城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235 |
| 33 | 1744년 9월(영조20) | 乾隆九年甲子九月日 鼎足山城本館上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476 |
| 34 | 1744년 9월(영조20) | 乾隆九年甲子九月日 鼎足山城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232 |
| 35 | 1747년 12월(영조23) | 乾隆十二年丁卯十二月日 鼎足山城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229 |
| 36 | 1750년 10월(영조26) | 乾隆十五年庚午十月日 鼎足山城史庫上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363 |
| 37 | 1753년 2월(영조29) | 乾隆十八年癸酉二月日 鼎足山城史庫上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533 |
| 38 | 1755년 1월(영조31) | 乾隆二十年乙亥正月日 鼎足山城史庫上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624 |
| 39 | 1758년 2월(영조35) | 乾隆二十三年戊寅二月日 考出形止案 | 규9205 |
| 40 | 1759년 윤6월(영조36) | 乾隆二十四年己卯六月日 鼎足山城上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479 |
| 41 | 1762년 윤5월(영조38) | 乾隆二十七年壬午閏五月日 史閣上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203 |
| 42 | 1762년 11월(영조38) | 乾隆二十七年壬午十一月日 鼎足山城史庫上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215 |
| 43 | 1765년 9월(영조41) | 乾隆三十年乙酉九月日 鼎足山城史庫上 實錄閣考出形止案 | 규9361 |
| 44 | 1767년 1월(영조43) | 乾隆三十二年丁亥正月日 鼎足山城史庫上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362 |
| 45 | 1767년 12월(영조43) | 乾隆三十二年丁亥十二月日 鼎足山城史庫上 實錄考出時形止案 | 규9617 |
| 46 | 1770년 4월(영조46) | 乾隆三十五年庚寅四月日 鼎足山城史庫上 實錄考出及追感皇恩編奉安時形止案 | 규9364 |
| 47 | 1776년 3월(영조52) | 乾隆四十一年丙申三月日 鼎足山城上 實錄考出形止案 | 규9537 |
| 48 | 1779년 10월(정조3) | 乾隆四十四年己亥十月日 鼎足山城史閣藏實錄考出形止案 | 규9530 |
| 49 | 1784년 7월(정조8) | 乾隆四十九年七月二十一日 鼎足山城上 實錄考出及御製奉安形止案 | 규9367 |
| 50 | 1795년 6월(정조19) | 乙卯六月日 江華府上鼎足山城 考出及曝曬形止案 | 규9370 |
| 51 | 1796년 5월(정조20) | 嘉慶元年五月日 鼎足山城上 實錄考出及御製奉安形止案 | 규9373 |
| 52 | 1798년 11월(정조22) | 鼎足山城上 實錄考出及御製奉安形止案 | 규9368 |
| 53 | 1801년 3월(순조1) | 嘉慶六年三月日 鼎足山城上 實錄考出及御製奉安形止案 | 규9621 |

[부록 표 5] 춘추관사고와 강화사고의 봉안형지안 비교 (규장각 소장)

| 형지안 | 1657년(효종8) 9월<br>선조수정실록 봉안형지안<br>[규9685] 춘추관사고 | 1657년(효종8) 10월<br>선조수정실록 봉안형지안<br>[규9714] 강화사고 |
|---|---|---|
| 표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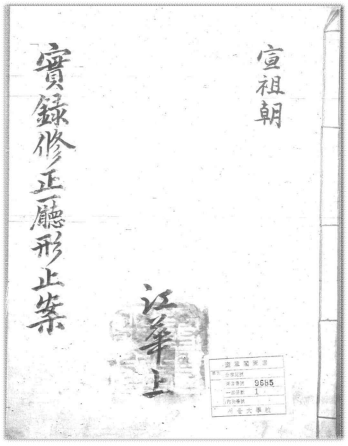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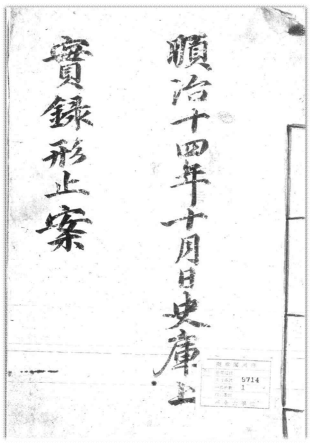 |
| 권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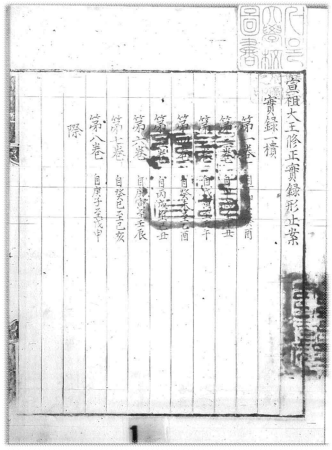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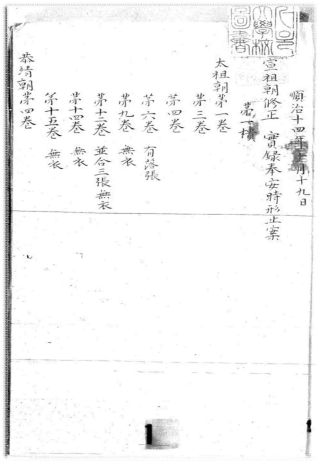 |
| 권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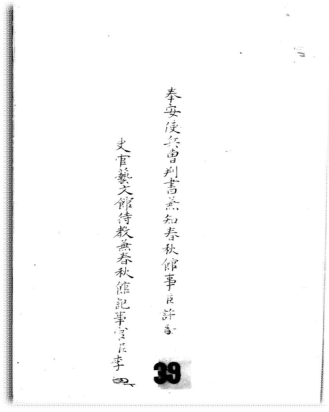 |